



CZECH

2012

체코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69-14



CZECH

2012

**체코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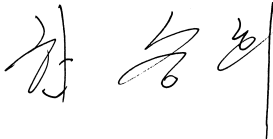
머 리 말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고급인력이 많은 전통적인 공업 국가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기업의 대 체코 수출은 급증하고 있으며, 진출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의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체계화된 자료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체코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Contents

제1장 개 황	1
1. 국가 개요	3
2. 정치·경제 동향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7
제2장 체코 진출 관련 주요 세무 이슈(Issue)	9
1. 태양광세(Solar Tax) 도입 후 소급 과세한 사례	11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연 지급 사례	13
3. 이전가격 조사시 관련자료 문서화의 중요성	15
4. 체코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상쇄 현상	18
5. 향후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의 이슈화 가능성 증대	20
제3장 체코의 조세제도	23
1. 직접세	25
2. 간접세	35
3.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46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48
5. Beneficial ownership	56



6. 체코의 조세행정	56
7. 기타 주요 세법	59
제4장 체코의 투자환경	63
1. 투자정책	65
2. 고용정책	72
부 록	77
부록 1.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79
부록 2. 주요 수출입 동향	91
부록 3. 자유무역협정 현황	93
부록 4. 다국적 대기업 적용 보조금 프로그램 리스트	96
부록 5. 조세협약(한국-체코)	99
부록 6. 회계와 감사	123
부록 7. 관세 및 수입규제 제도	127
부록 8. 주요 인증제도	133
부록 9. 지적 재산권	137
부록10. 노무관리	140
부록11. 진출 형태에 따른 회사 설립절차	148
부록12. 투자입지 선정 및 투자환경	154
부록13. 무역과 투자 시 애로사항	163
부록14. 일반적인 상관습	165
부록15. 시장특성	169
부록16. 체코 정착 가이드	173



제1장 개황

1. 국가 개요
2. 정치·경제 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국가 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체코 공화국 - 영 문 : The Czech Republic - 현지어 : Ceska Republika
위 치	북위 48-51도, 동경 12-19도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접경)
면 적	78,864km ² (한반도의 1/3, 산악: 평지=3:7)
기 후	대륙성 기후. 겨울이 비교적 온화, 여름이 무덥지 않음 (연평균 9-10도)
수 도	프라하(Praha)
인 구	1,055만명(2011년 09월 기준)
주요 도시	프라하(125만 명), 브르노(37만 명), 오스트라바(34만 명), 올로모츠(23만 명), 플젠(19만 명) 등
민족(인종)	체코인(94%), 슬로바키아인(2%), 기타(4%)
언 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39.2%), 개신교(6.2%), 희랍 정교(3.4%), 무교(40%), 기타(11.2%)
건국일 (독립일)	1918. 10. 28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실권자)	○ 국가 원수 : Vaclav Klaus 대통령 - 취임일 : 2008.2.15 ○ 총리 : Petr Necas(ODS) - 취임일 : 2010.6.28

* 출처 : 체코 통계청, 체코 정부 (2012년 3월 기준)

나. 경제 지표

G D P	2,181억 달러(경상 가격, 2011년)
실질 경제성장률	1.8%(2011년)
1인당 GDP	25,789달러 (2011년)
실업률	8.5%(2011년)
물가상승률	1.9%(2011년)
화폐단위	Czech Crown(CZK, Kc)
환율	1EURO=24.775, 1달러=18.739 (2012년 3월 6일 기준)
외채	785억 달러(2009년 말)
외환보유고	472억 달러(2011년)
산업구조	제조업(27.5%), 서비스업(62%), 건설업(6.4%), 1차 산업(4.1%) (2010년)
교역규모	○ 수출 : 1,622억 달러, 수입: 1,514억 달러 [무역흑자: 108억 달러] (2011년)
교역품	○ 수출 : 자동차, 기계류, 기초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수입 :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원유, 가스

* 출처 : 체코 통계청, 체코 중앙은행, EIU (2012년 3월 기준)

2 정치·경제 동향

가. 정치 동향

2010년 5월 28-29일 양일간 실시된 체코 하원의원 총선거결과, 각 정당 별 득표율은 사회민주당(CSSD)이 22.08%, 시민민주당(ODS)이 20.22%, TOP 09 당이

16.70%, 공산당(KSCM)이 11.27%, 그리고 공공당(VV)이 10.88%로 의회진출에 성공하였으나 기독교민주당(KDU-CSL)과 녹색당(CZ)은 득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하여 의회진출에 실패하였다.

전체 투표율은 62.60%로 2006년의 64.47%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존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신생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높은 선거 결과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총 200석의 하원의석 중 정당 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보면 좌파성향의 사회민주당이 56석, 공산당이 26석에 그침으로써, 우파성향의 시민민주당 53석, TOP 09 당 41석 및 공공당 24석으로 우파정당들이 과반수가 넘는 118석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하원의석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우파 정당들의 연합 정부가 7월 13일 Klaus 대통령이 시민민주당(ODS) 당수인 Mr.Necas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14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신임내각을 승인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다.

신정부의 재정안정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당초 목표인 GDP의 5.3%를 달성하고, 2011년에는 540억 크라운의 비용절감과 200억 크라운의 세수확대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4.6%인 135억 크라운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3%이하로 축소하고,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으로 2016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재무부 장관인 Mr.Kalousek은 신정부의 재정안정 정책을 밝히고 있다.

신정부의 대표적인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교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정부 조직의 임금을 10% 삭감하고, 여타 일상 운영경비의 10% 절감, 하원 및 헌법 위원회의 급여 5% 삭감 등이며,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부문 지원금 및 주택건설 보조금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추가부담 방안과 세법의 개정을 통한 세원확대 및 세율인상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개혁 부문에 있어서는 최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개정하여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고,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대학교 등록금을 신설하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방안과 해고수당을 근무기간에 따라 1개월, 2개월 및 3개월 치 급여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부패척결 방안으로는 부패 척결 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입찰의 창구일원화 등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체코의 2010년 하원선거 최종 결과

정 당 명	의 석 수	득 표 율(%)
사회민주당(CSSD)	56	22.08
시민민주당(ODS)	53	20.22
TOP 09	41	16.70
공산당(KSCM)	26	11.27
공공당(VV)	24	10.88
총 계	200	81.15

나. 선거 제도

대통령은 상, 하원 합동 의회에서 5년마다 선출(간접 선거)되며, 총리는 하원 최다득표 정당에서 대통령이 지명 후 의회의 신임 투표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 상원 의원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총 81석 중 2년마다 3분의 1씩 선출되며, 하원 의원은 국민 직접 선거에 의해 매 4년마다 선출된다.

상하원 선거 제도 개요

구분	하원	상원
의 원 수	200	81
임 기	4년	6년
당선 기준	득표율에 따라 결정	최다 득표자
선거구 수	14개	81개
출마 자격	만 21세 이상	만 40세 이상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체결협정 및 교역

체결협정	○ 외교 관계 수립(90.3)
	○ 무역 및 경제 협력 협정(90.10 서명, 91.4발효)
	○ 항공 협정(90.10 서명 및 발효) - 항공 협정 개정(편명 공유 조항 등 신설) 협상 타결(2004.5)
	○ 이중 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 보장 협정 (92.4 서명, 95.3 발효)
	○ '00-'02간 문화 교류 시행 계획 의정서 서명 (2000.5)
	○ 문화 협정(94.10 서명, 발효)
	○ 사증 면제 협정(94.10 서명, 94.11 발효)
	○ 과학 기술 협력 협정(95.3 서명, 95.4 발효)
	○ 원자력 협력 협정(2001.3 서명)
	○ 한-체코 사회보장협정(2008.11 발효)
	○ 한-EU FTA 협정안 승인(2011년 7월 1일 발효)
교역규모	○ 2010년 US\$ 9억 2,600만(우리나라 수출) US\$ 2억 6,600만(수입); 무역흑자 US\$ 6억 6,000만
	○ 2011년 US\$ 1,713백만(수출) US\$ 501백만(수입); 무역흑자 US\$ 1,212백만
교역품	○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등(우리나라 수출)
	○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유리제품 등(수입)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2011년 12월 누계) - 신고 기준: 신규 법인수 49개사, 신고금액 US\$1,371백만 - 투자 기준: 송금회수 188건, 투자금액 US\$ 1,053백만 ○ 체코의 대한 투자: 없음
교민	○ 약 1,900여 명 (대사관 등록 기준)

* 출처 : 주체코 한국대사관, KOTIS, 수출입은행(2012년 3월 기준)

나. 우리나라와의 주요 이슈

2005년 하반기 이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진출 확대로 경제계는 물론 정치계 등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체코시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양국간 특별한 이슈는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004년 5월 체코는 북한에 대사관(대리 대사급)을 개설하였으며 동 대사관을 활용하여 EU 회원국으로서 EU의 대북 정책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뉠 대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 체코 대사관에서는 한류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KPOP 경연대회, 한국드라마 방영 추진 및 한식세계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제2장 체코 진출 관련 주요 세무 이슈(Issue)

1. 태양광세(Solar Tax) 도입 후 소급 과세한 사례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연 지급 사례
3. 이전가격 조사시 관련자료 문서화의 중요성
4. 체코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상쇄 현상
5. 향후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의 이슈화 가능성 증대

1 태양광세(Solar Tax) 도입 후 소급 과세한 사례

□ 사례의 개요

- 체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태양광 분야에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었으나,
- 2010년 말, 체코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의 너무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발전 차액 지원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였고, 태양광세(Solar Tax)를 도입하여 2011년 초부터 시행하였음 (2011년~2013년 한시 적용이라는 조건이 있었음)

□ 태양광세 도입에 따른 세무 상 논란

- 기존에 없던 세금을 짧은 기간에 갑작스럽게 신설하면서도 26%라는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과
- 2011.1.1.부터 시행하면서 2009년부터 이미 설치하여 가동 중인 3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도 2009년과 2010년의 가동한 기간만큼의 세금을 소급해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소급과세’라는 논란이 발생함

□ 태양광세 도입 후 경과

- 체코 정부는 태양광세를 2009년과 2010년 가동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였고, 태양광발전소 투자자들은 소급과세라는 이유를 들어 체코 정부에 소송을 제기
- 동 소송에 대하여 체코의 프라하 시 법원(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결 (현재 2심 진행 중)

□ 체코 진출 시 시사점

- 체코는 유럽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재정수지를 개선하고자 재정지출 축소, 연금 개혁, 부가가치세 중심의 세제 개혁 등 일련의 조치가 예상되고 있음

(참고) 체코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가장 기본적인 세율은 20%이고 음식과 의료, 숙박시설, 물, 도서, 대중교통, 문화와 사회복지와 같은 제품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에는 10%의 세율을 14%로 상향 조정하고 2013년부터는 양 세율을 통합하여 17.5%로 인상하려고 추진 중임. 동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 수입 증가는 연간 약 420억 크라운 정도로 예상됨

- 태양광세의 경우 체코 1심 법원에서는 2009년과 2010년분에 대해서는 소급과세라고 판결하였으나, 향후 2심 이후에도 동 판결이 유지된다고 100%로 확실하지도 않으며, 2011.1.1.이후 해당 분은 소급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 기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할 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조세에 해당함
- 따라서,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제도나 법령이 새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연 지급 사례

□ 사례의 개요

(사례1)

- 체코의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30일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30일내가 아닌 세무조사 종결 후 30일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에 토대로 체코 세무관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실제 조사 착수를 늦게 하거나 조사 종결을 늦추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음

(사례2)

- 최근 체코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가능 일자를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또는 발행일자) 기준이 아니라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일자(또는 우편물 접수일자)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음

(참고)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일자는 6월 25일이고 동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우편으로 접수한 날짜가 7월 1일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또는 장부상 기재된 기표일자에 상관없이 6월분이 아닌 7월분으로 환급신청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액 지연지급에 대한 세무 상 논란

- 체코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 미종결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 관련 법령에는 세무조사 종결 후 30일까지 지급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임

□ 체코 진출 시 시사점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기한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3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자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우편 등으로 매출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가급적 당해 월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빨리 할 수 있음

3 이전가격 조사 시 관련자료 문서화의 중요성

□ 사례의 개요

- 체코는 이전가격에 대한 서류의 문서화에 대하여 여러 권고사항들을 두고 있으며(가이드라인 D-293, D-292, D-258), 동 사항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체코 세무당국에 의해 준용되고 있음
- 또한 체코에서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준용되고 있음
- 체코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개시 시에 회사에 이전가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문서화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전가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과 관련한 추가 검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 문서화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이전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최근 사례1)

- 체코자회사가 다른 그룹사에 대한 제품매출에서 손실을 기록한 반면 동시에 상당한 경영지원비가 지급됨
- 체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착수 직후 체코자회사는 손실을 기록하는 반면 동 그룹은 수익은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 체코자회사는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는 미약한 수준의 문서화가 되어 있었기에 동 수준의 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함
- 체코 세무당국은 약 3개 월 가량의 조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이전가격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세액 추징함

(최근 사례2)

- 체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착수 직후 체코자회사가 본사 용역 대가로 지급한 경영지원비, IT 비용, 연구개발비 등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 체코자회사는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서류가 전무하여 체코 조사팀에 문서화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
- 체코 세무당국은 약 2년 동안 문서화 과정을 지속하였고, 이전가격 부문에서 상당액의 세액을 추징함

(최근 사례3)

- 체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착수 직후 체코자회사에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 체코자회사는 이전가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문서화된 서류를 작성·보관(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바 체코 조사팀에 즉시 문서화된 서류를 제출하였음
- 체코 세무당국은 제출된 문서화된 서류를 약 1주가량 분석 후 회사가 이전가격에 대한 주의를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는 점과 제출된 서류 상으로 이전가격 결정에 큰 모순이 없다고 인정하고
- 조사기간 연장 없이 당초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처리 하였음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액 추징 없었음)

□ 체코 진출 시 시사점

- 체코 자회사와 국내 모법인 간의 이전거래와 관련한 문서화와 작성·보관 수준이 조사 기간과 추징 세액 규모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 세무 당국의 이전가격 검토 시에 회사가 결정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통상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 이전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문서화를 해 두는 것이 체코 진출 시 세무 상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법임

(예시)

정상가격 범위를 4분위 값으로 산정할 경우를 가정 시(상위 사분위 값(0.75), 중앙 값(0.50), 하위 사분위 값(0.25)) 정상가격의 범위를 0.75~0.25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신고 또는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회사가 적용한 가격(0.26)이 동 범위 내(0.75~0.25)에만 위치한다면 비록 그 값(0.26)이 하위 사분위 값인 0.25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적용한 가격인 0.26을 정상가격으로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과세 관청에서 동 정상가격 범위 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회사는 0.24 적용)에는 통상적으로 중앙 값인 0.5를 기준으로 0.5와 0.24의 차액인 0.26을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 소득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4 체코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상쇄 현상

□ 사례의 개요

- 체코 정부는 제조업으로 투자한 외자기업의 체코자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① 새로운 제조공장 설립 및 기존 공장 확장에 대해 법인세 감면
 - ②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 매입 (현금 보조 성격)
 - ③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업훈련 보조금 형태의 고용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급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에 국한)
- 상기 투자 인센티브는 체코에 현지자회사 형태의 투자를 할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런데, 위 ①의 체코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한국 모기업의 실제 세후 소득(체코 법인세 + 한국 법인세)은 위 ①의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그 효과가 상당히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동 현상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례 분석

- (가정)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으로 체코에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고 체코 자회사는 세후 소득을 한국 모회사에 100% 배당으로 송금하였을 경우를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한국 모회사의 세후 순현금 유입액을 비교
 - ① 체코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② 체코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100% 받은 경우

구분	항목 구분	감면 "0"	감면 100%	비 고
체코 자회사	세전이익	1,000	1,000	
	법인세 산출세액	190	190	체코 세율 : 19%
	법인세 감면액	0	190	차액 : 190
	실제 법인세	190	0	
	세후 소득	810	1,000	
	배당한 금액	810	1,000	
	배당 후 현금	0	0	
	배당 시 원천징수	40.5	50	제한세율 5%
	실제 송금한 금액	769.5	1,000	
한국 모회사	배당소득	810	1,000	
	(실배당 수령액)	769.5	1,000	
	법인세 과세표준	1,000*	1,000	* 간접외국세액 포함
	법인세 산출세액	220	220	한국 세율 : 2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220	50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230.5	50	
	- 직접외국납부	40.5	50	
	- 간접외국납부	190*	0**	
	- 간주외국납부	0	0	
	(이월세액공제 대상액)	10.5	0	
	실제 법인세	0	170	
	(결과) 세후 현금 유입액	769.5	780	차액 : +10.5
(결과) 이월세액 공제액	10.5	0	차액 : △10.5	

* $190 \times \{810 / 810\} = 190 \rightarrow$ 공제 한도 초과

** $0 \times \{1,000 / 1,000\} = 0$

-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체코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의 차이가 190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모회사의 세후 순현금 유입액의 차이는 불과 10.5에 불과함 (이월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에는 현금유입액이 모두 780으로 동일함)

5 향후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의 이슈화 가능성 증대

□ 개요

- 체코에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체코자회사들에 대한 체코 과세당국의 향후 무형자산과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 됨

□ 체코 진출 형태의 변화 예상

-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철도·도로 등의 교통이 발달하였고, 뛰어난 기술력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공업 국가로서
- 현재까지는 체코에 제조장을 갖추고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 향후에는 직접 진출형태 이외에도 체코를 동유럽과 남유럽 진출을 위한 거점 기지로 하여
- 현지 고급 인적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위한 ‘R&D센터’,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물류 공급을 위한 ‘물류기지’, 시장 조사 및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 등의 진출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 됨

□ 그 간의 무형자산 이전가격에 관한 논란

- 최근 관계회사 간 이전거래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무형자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미국의 경우 세법 제482조에 따라 이전가격으로 과세조정 한 것 중 절반이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이전에 관한 것임)
-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독립기업 간 정상가격기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 특히 무형자산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정상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어 왔음
- “무형자산에 대한 특별한 대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 제6장(무형자산)을 삽입(1995년-1997년)하여 지침을 제공하였지만,
- 동 지침은 무형자산의 이전에 관여된 관계회사 간 이전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고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 최근 무형자산 이전가격에 관한 논란

-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6장(무형자산)은 '95-'97년 작성되어, 현재의 달라진 환경에 대한 논의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과세처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 OECD 재정위원회 제6작업반(OECD CFA WP6)에서는 ‘13년 말까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5개의 Issues Notes를 작성하여, 동 Issues Notes를 기존의 제6장(무형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WP6 Special Session on the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WP6 TPI")】

Issues Notes 1 : 무형자산의 개념 ('identification')

Issues Notes 2 : 계약조건, 무형자산의 소유권 및 정상거래 여부

Issues Notes 3 : 가치평가(valuation)를 위한 비교대상 및 방법

Issues Notes 4 : 이전가격 결정 시기 (hindsight 관련)

Issues Notes 5 : 이전가격 관련 거래 사례(illustrations)

□ 향후 무형자산 이전가격 관련 대응 방안

- 무형자산의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OECD 재정위원회 제6작업반(OECD CFA WP6)에서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6장(무형자산)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서 (2013년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개정 대상 내용에는 무형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새롭게 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 다음의 내용을 Check하여 무형자산의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서화된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 후 작성하여야 할 것임

① 이전가격 목적 상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지 또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value, Availability of Legal protection, Transferability 등의 용어 해석에 주의)

② 사업무형자산(trade intangibles)과 마케팅무형자산(marketing intangibles)의 구분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③ 특허가치의 평가 및 지리적 시장차이의 중요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④ 거래당시 무형자산 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어떻게 그 가치를 산정하고 있는지?

⑤ 주기적 대가와 일시적 대가를 적정하게 분류하고 주기적 대가에 대한 조정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⑥ 다른 사람(회사)이 소유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배분하고 있는지?

⑦ 무형자산 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와 그 무형자산을 이용한 기여도 평가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⑧ 체화된 무형자산(embedded intangibles)이 포함되어 있는지?

⑨ 특수관계자 간 무형자산 지분(interests) 및 소유권(ownership) 배분이 적정한지?

(법률적 소유권, 경제적 소유권, 합의에 의한 소유권, 원가분담약정)

⑩ trademark나 trade name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을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기업이 타 기업보다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하게(extraordinary)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과세조정이 적정한지?



제 3 장 체코의 조세제도

1. 직접세
2. 간접세
3.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5. Beneficial ownership
6. 체코의 조세행정
7. 기타 주요 세법

1 직접세

이하 체코 조세제도의 내용은 ‘KPMG 체코’에서 발간한 ‘Investment in the Czech Republic’ 책자 내용을 번역하고 일부 수정한 내용임

가. 법적실체에 대한 과세

체코가 거주지인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는 법적실체에 대한 수익에 부과되며 주로 유한회사(s.r.o.)와 주식회사(a.s.)가 해당된다. Partnership은 상법에 따른 법적실체이기는 하나 general partnership (v.o.s.)의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신 수익에 대한 각 파트너 지분만큼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Limited partnership(k.s.)에서는 수익 중 limited 파트너의 지분은 Limited partnership 수준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반면, general 파트너의 지분 해당분은 v.o.s.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외국회사의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는 또한 보통 체코 내에서 야기된 수익이나 비용의 비율로 계산된 간주 수익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법적실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실현한 수익이나 이득은 그들의 사업소득계산시 포함 된다.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실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존재한다. 그들은 어떤 제한된 과세혜택을 영위할 수 있다.

법인세율은 2011년에는 19%이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기금, 뮤추얼펀드 및 연기금의 경우 5%의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요건을 충족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되고 동일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만약 모회사가 적어도 12개월 동안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다면 지분매각이익은

만약 모회사가 체코거주자이고 자회사가 EU 회원국 또는 체코와 이중과세방지협약(특정 조건들이 필요)이 체결된 비 EU회원국의 거주자일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체코회사 지분 매각이익은 과세되나, 매도자가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이고 적어도 10%의 지분을 12개월 동안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체코 내에는 연결납세제도가 없다. 그룹내 각 회사는 개별적으로 과세되며, 다른 회사 간에 수익에 대해 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파트너십 구조를 통하여 사실상 연결납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체코거주자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15%로 과세된다. 이는 만약 지급자가 EU회원국이 거주자인 회사이고 적어도 지분의 10% 를 12개월 동안 보유한다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또한 적용 된다

- 지급자가 체코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 지급자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조합(dru.stvo)과 유사한 법적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수취자가 적어도 10%의 지분을 12개월 동안 보유한 경우
- 지급자가 체코법인세와 유사한 세금의무가 있으며 세율이 적어도 12%인 경우

비과세는 수취자가 소득의 beneficial owner일 때만 적용된다.

회사의 합병과 분할은 비록 소멸회사의 2004년 이전의 결손금은 소멸될지라도 일반적으로 공평한 세금기준으로 수행되어진다. EU 합병 지시문과 국가 간 합병에 관한 EU 지시문은 광범위하게 체코법으로 준용되어졌다. 일반적으로 국내법률은 합병의 과세중립성을 유지하고 조세회피가 거래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특정 법적 조건들(사업의 양도와 합병)을 만족하는 거래의 미사용된 결손금의 이전을 허용한다. 게다가, 동 규정에는 결손금을 동 결손금을 발생시킨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same activity” 규정도 있다.

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소득의 시작점은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이는 소득세법 하에서 세무조정 대상이다. 만약 소득세법상 반대규정이 없다면 회계상 수익과 비용은 과세 및 공제대상이다. 사업수익의 일부로서의 자본이득은 일반적인 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이익분배 면제규칙 하에서 비과세된다.

회사들에게 있어 세무연도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역월의 마지막 날인 경우에 한하여 12월 31일 이외의 날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회계연도 종료일을 변경할 경우 1년 미만이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법규상 이 사항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들은 항상 역년에 기초하여 과세된다.

소득세법은 공제 및 비공제 비용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규칙은 과세소득을 야기하고 확실하게 하거나 유지할 목적의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

비공제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자본적 지출
- 대부분의 충당금(재고자산의 순실현재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충당금을 포함)
-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서의 자산을 보여주기 위한 대부분의 평가차액
- 유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상 감가상각비
- 기부금과 접대비
- 비과세소득을 발생하는데 기여한 비용들
- 수익의 분배
- 과소자본세제에 의해 제한된 비용들(아래 참조)
- 자회사보유와 관련된 모회사의 관리비용 : 이자지급자가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지분을 취득하기 전 6개월 내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회사 지분보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세자가 실제 간접비용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간접비용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나 다른 이익분배에 대한 소득의 5%로 제한된다.

공제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유무형자산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 특정 제한조건이 있는 리스
- 법에 규정된 특정 충당금
- 원재료, 상품, 재공품, 제품의 정리비용 : 정리의유, 수단, 시간, 장소와 아이템의 명세서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에 대한 공제 가능한 지출과 동일한 특별공제금액은 그러한 지출이 두 번 공제됨을 효과적으로 의미하도록 청구될 수 있다. 만약 동 지출이 발생한 기간에 공제되지 않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 리스료는 금융리스(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금융리스)를 제외하고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상 처리된 대로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리스기간은 법인세법상 적어도 최소 상각 기간(첫번째 감가상각 카테고리내 자산의 경우 36개월, 두번째 감가상각 카테고리내 자산의 경우 60개월, 세번째 감가상각 카테고리내 자산의 경우 120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두번째와 세번째 카테고리 자산의 경우 6개월 짧은 리스기간(54개월 및 114개월)이 가능함. 부동산의 경우는 30년이어야 함
- 판매가격은 정액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세무상 장부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의 경우 만약 자산이 리스기간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매각된다면 판매가격은 위에서 계산된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다.

만약 리스기간이 위에서 최소 상각기간 보다 짧으면 리스비용은 판매가격이 세무상 간주 잔존가액보다 낮지 않는 한 세무상 공제 가능하다. (기타 관련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충당금에 대한 법은 대손충당금과 제각(wirte-off)에 대해 제한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또한 납세자가 프로젝트 계획 등의 형태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서 미래의 수선에 대비하여 공제 가능한 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계상되는 충당금은 자금을 연간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별개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키는 경우에만 세무상 공제 가능하다. 충당금에 대한 법은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에 대해 발생한다. 유형고정자산은 아래와 같이 폭넓은 예상내용년수를 반영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

감가상각 카테고리	감가상각기간
1. IT 장비, 일부 기계장치 등	3년
2. 승용차, 사무실 장비, 일부 기계장치 등	5년
3. 중장비 등	10년
4. 파이프라인 등	20년
5. 카테고리 6에 속한 것들 이외의 건물	30년
6. 관리상업용 건물, 호텔, 백화점	50년

2009년 1월 1일과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취득된 그룹 1과 2에 속한 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이 짧아졌다. 감가상각 그룹 1에 속한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1년으로 감소되고 감가상각 그룹 2에 속한 자산의 경우 기간이 2년으로 감소된다.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한 조정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기간에도 적용된다.

2011년부터 태양광설비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자산들은 240개월 동안 상각되며 반드시 (다른 유형자산의 상각과는 달리) 반드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결산조정).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한 조정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기간에도 적용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나 가속상각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속상각법은 자산의 매입가격에 일련의 계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산업용건물의 계수는 다음과 같다.

- 첫번째 연도 : 30
- 이후 연도 : 31

즉, 첫번째 연도의 계수는 내용연수이고 이후 연도의 계수는 상각연도에 1을 더한 것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첫 해의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매입가격을 계수로 나눈 금액임
- 이후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에 2를 곱하고 이를 31에서 1, 2...등을 차감하여 계산된 계수로 나눈 금액임.

특별한 가속상각율이 감가상각기준금액을 감소시키도록 첫째 감가상각 시 이용될 수 있다. (기타 관련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무형자산의 세무 상 상각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 시청각 제품 : 18개월
-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비 : 36개월
- 창업비 : 60개월
- 기타 : 72개월

영업권은 세무목적상 무형자산이 아니다. 세무목적상으로 영업권은 매수한 기업의 총 혹은 일부 가치와 그것의 개별자산의 시장가치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영업권의 세무상 상각기간은 180개월이며, 반면 회계상 내용연수는 5년이다. 매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영업권(예를 들면 합병)은 세무상 상각할 수 없다. 영업권 회계처리 대신에 기업의 회계상 부채를 차감한 잔여가치의 합과 시장가치의 차이는 개별자산부채의 재평가 없이 개별 재평가차액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다. 이의 회계상 및 세무상 상각내용연수는 180개월이다.

결손금은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회사수익의 80% 이상이 손실이 발생한 기간에 수행된 활동과 동일한 활동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결손금은 이월이 되지 않는다. 등록자본금에 대한 지분이나 의결권의 25%이상의 변화, 혹은 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변화는 항상 실질적인 변동이라고 간주된다.

납세자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 후 이월된 결손금을 이용하기 위해 관계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말 체코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세무상 혜택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 설비에서 동 기간 내에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송망 운영자 혹은 지역 유통망 운영자에 의한 의무 납부 대상이 된다. 의무 납부 기준은 태양광발전 전력 생산자에게 지급되는(부과세를 제외한) 고정 구입 금액 또는 그린 보너스가액이다. 의무납부율은 고정매입가액의 26%와 그린보너스 가액의 28%이다.

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은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세,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에 대한 과세는 주로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체코 내 거주자는 모든 소득(국외원천소득포함)에 대해 과세되고, 반면 비거주자는 체코 내 원천소득만 과세된다.

○ 거주자의 정의

- 체코 내 영구거주지를 가지고 있거나,
- 세무기간(12월 31일까지)동안 체코 내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할 때. 개인 소득세는 다음에 부과된다.
 - :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임대소득, 자본이득, 기타 포함되지 않은 기타소득

많은 비과세소득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증권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 면제이다. 면제는 6개월 이상 보유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된 유가증권의 매각에 적용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면제조건이 더 엄격해졌고 동 과세면제는 만약 지분이 6개월 동안 보유하고 매각에 앞서 24개월 동안 등록자본과 의결권에 대해 보유한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동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가증권매각이익은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된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이득은 5년간 보유 시 또한 과세 면제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이익도 그 자산이 처분 전 5년 이상 납세자가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주택처분이익도 주택이 처분 전 최소 2년 동안 납세자의 주거주지로 사용되었으면 비과세된다. 만약 주택이 2년 미만 사용되었다면, 처분이익이 미래에 납세자의 주거에 사용된 경우에 과세 면제가 적용된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super-gross” 급여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총 급여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더한 금액이다. 체코 내 과세되는 해외근로소득은 해외고용주가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를 얼마로 납부하던지에 관계없이 34%를 간주납부액으로 하여 증가된다. 그러므로 유효세율은 15%가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다.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개별 과세되며 이는 15%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해외원천투자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15%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소득은 실제경비를 공제하거나 선택적으로 총소득의 30%를 일괄 공제한다. 근로자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공급 같은 혜택은 과세된다.

종업원의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자금 대출이자, 정부보조를 받는 보충적 연금보험료 지출액, 사적 생명보험료와 기부금과 같은 항목들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공제될 수 있다.

체코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조항이 별로 없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연금불입액은 과세되는 혜택이다.

유사하게, 종업원 주식옵션구조를 다루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옵션행사에서 실현된 이득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옵션 부여 시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체코기업이나 외국기업의 등록된 지점의 피고용인 급여는 매달 원천징수 되고 연말정산 한다. 또한, 비록 과세되지만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파견자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대신 근로자들이 직접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외국기업의 피고용인들의 세금처리방법 중 가능한 “deemed employer”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체코 내에서 근무하되 그 장소가 외국기업의 용역에 대해 외국기업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코기업의 통제 하에 있을 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체코기업은 세무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되고 피고용인의 소득세를 계상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의 대안으로 이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선의의 외국투자자들의 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기초공제로 CZK 23,640을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많은 공제항목들이 거주자에게 부여되며, 예를 들면,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CZK 68,0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와 주거를 함께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CZK 24,840, 자녀공제로 CZK 11,604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의 총소득의 90% 이상이 체코원천소득에서 발생한다면 상기 공제혜택이 비거주자에게 부여된다.

사회보장세는 피고용인 급여의 45% 납부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용인이 11%, 고용주가 34%를 납부하며 이는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고용주 (%)	피고용인 (%)
연금	21.50	6.50
질병보험	2.30	0.00
실업보험	1.20	0.00
건강보험	9.00	4.50
합 계	34.00	11.00

2011년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 상한) 최대 연간평가 기준액은 CZK 1,787,280이다.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매달 평가 기준액 총액이 최대 연간평가 기준액을 초과할 때까지 매달 기준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최대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고용주는 사회보장세와 건강보험료 납부를 중지해야 한다. 평가 기준액은 과세표준과 매우 비슷하다.

만약 종업원이 역년 동안 고용주를 변경한다면 새로운 상한 CZK 1,787,280이 종업원의 새로운 급여에 적용될 것이나, 만약 평가 기준액 총액이 최대상한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기관은 종업원이 요구하면 종업원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체코기업과의 근로계약 하의 외국인인 체코의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있다. 만약 외국인이 체코 이외의 고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있고 체코와 고용주의 나라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며, 조약 규정 내에 피고용인들이 자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피고용인은 체코사회보장세 의무가 있다. 2004년 5월 1일부터 과세당국은 EU 종업원의 파견근로자가 EU 사회보장세 규정에 근거하여 체코사회보장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 파견자가 EU 규정 하에서 파견자의 고국의 시스템을 적용 받지 않는다면 체코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간접세

가. 부가가치세 개요

체코 부가가치세법은 EC 부가가치세 Directive 2006/112의 일반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체코 내 공급장소에서 사업 범위내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세대상자가 대가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된다. 그러나 특정한 업무상 증여 및 영업용자산의 사적 이용과 같은 특정거래는 대가 없이 수행되어도 또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 체코부가세의 대상 거래

- 체코 내 공급장소인 재화의 인도와 고정자산의 이전
- 체코 내 공급장소인 용역의 공급
- 체코 내 공급장소인 EU 역내로부터의 재화의 취득
- 체코로 수입된 재화

일반적으로 체코부가세가 등록된 자에 의해 다른 EU회원국의 부가세납세자로부터 취득된 재화는 체코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재화를 취득하는 개인/회사에 의해 부가세가 자가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재화가 다른 EU 회원국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된다면 “간주” 역내재화취득이 취득자에 의해 신고되어야 한다. 일반 부가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취득하는 개인/회사는 동일한 부가세 신고서상에 관련 매입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다.

EU 이외에서의 재화의 수입은 수입업자에 의해 납부되는 체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수입업자가 체코 부가세에 등록되어 있다면 수입부가세는 표준 부가세 신고서를 통하여 신고 되어야 한다. 부가세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수입업자는 동일한 부가세 신고서에 수입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용역의 공급장소를 결정하는 아래의 규칙이 적용 가능하다.

- 만약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B2B 서비스)라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등록사무소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장소
- 만약 공급받는 자가 EU 이외의 제3국 회사이고 체코에 부가세가 등록되어 있다면, 위 규정은 오직 용역이 체코 밖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체코 내에서 소비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과세공급 장소는 체코 안이다
- 만약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없는 회사(B2C 서비스)라면 용역공급자가 등록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

상기 일반규정에는 수 많은 예외사항이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이동이 가능하지 않는 자산과 관련된 용역: 공급장소는 자산이 소재한 국가이다.
- 건강, 문화, 스포츠,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무역 관련 행사 입장료 등 공급장소는 용역이 수행되거나 관련 거래가 발생하는 국가이다.
- 여객운송업 : 공급장소는 운송용역이 제공되는 국가이다.
- 음식공급업과 음식점 용역: 공급장소는 용역이 공급되는 국가이다.
- 운송수단으로써 단기 리스: 공급장소는 차량이 인도되는 국가이다.
- 수 많은 용역에 대해 만약 그것들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급된다면 특별한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 등록

회사나 개인이 체코 내에 등록사무소,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부가세목적상 체코 실체로 간주된다. 체코회사가 체코 내에서 과세공급을 부가세등록기준인 연속하는 12개월 동안 백만 CZK을 초과하면 체코부가세에 대해 부가세등록과 부가세계상을 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체코회사는 자발적으로 체코 부가세등록을 할 수 있다. 체코 내에 등록사무소나 사업장이 없는 EU 및 외국회사/개인은 그들이

체코 내에서 부가세를 계상해야 하는 과세공급을 한다면 reverse charge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체코부가세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이는 특히 체코 내 부가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로의 재화의 체코 내 공급과 일부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그러한 개인/회사에 대한 부가세등록 기준이 없으며 어떤 가치가 있는 체코 내 과세공급이 있다면 부가세 등록이 의무적이라는 의미이다. EU 및 외국회사는 체코 내에서 재정책임자를 임명할 의무는 없다.

체코 내 외국회사와 EU회사의 고정사업장은 형성되는 때 부가세를 등록하여야 한다. 비체코 회사는 고객이 부가세등록이 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부가세에 대한 계상의무가 체코 고객에게 이전될 수 있거나, 혹은 간소화 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체코 부가세등록을 피할 수 있다. 간소화된 절차는 특히 아래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 삼각거래의 경우
- call-off stock 매출
- 재화의 공급과 설치

이러한 용역의 공급과 많은 다른 재화의 공급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특정조건이 필요하므로, 비체코 공급자가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체코 내 등록된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관계사 그룹은 단일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의 유형

부가세등록번호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예시 : CZ1234567890 (번호의 수는 달라질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서

체코회사나 개인의 연간매출액이 천만 CZK을 초과하면 부가세 신고서는 매달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연간매출액이 이백만 CZK 미만이면 부가세신고서는 분기별로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매출액이 이백만 CZK과 천만 CZK 사이면 과세 대상자는 월별 혹은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체코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체코 실체는 분기별 신고만 가능하며 월별신고는 불가능하다. 부가세 신고서는 납부할 부가세가 없어도 해당 과세기간의 익월 2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액이 결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은 세무서의 은행계좌에 지급이 결제된 날이다.

만약 초과 매입부가세가 발생하면 환급에 요청절차 없이 부가세신고기한 후 30일 내에 부가세 환급액이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세무조사가 부가세 환급 전에 시작되면 환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그때에는 부가세가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 내에 지급될 것이다.

○ EC Sales Lists

EC Sales List(“ESL”)는 부가세등록사업이 다음과 같으면 제출되어야 함

1. 다른 EU 회원국 내에 부가가치세가 등록된 자에게 체코에서 해당 EU 회원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2. 체코에서 다른 EU 회원국으로 자가소유 재화를 이동시키거나
3. 다른 EU 회원국 내에 부가세등록이 되어 있는 무역업자 사이에서 삼각거래의 중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경우
4. 과세공급장소와 고객이 설립된 장소가 다른 EU 회원국이고,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아닌 경우(일반규칙), 동 다른 EU 회원국에서 설립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EC Sales List는 거래가 발생한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위 4번에 기재된 용역만을 공급하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 EC Sales List는 분기별로 제출될 수 있다.

○ Intrastat declarations

다른 EU회원국으로 또는 회원국으로부터 연간기준을 초과하는 재화의 반입 또는 반출 금액 각각 CZK 8,000,000) 재화의 공급 및 매입이 있는 부가세등록 사업자는 Intrastat 신고를 하여야 한다.

Intrastat 신고서는 신고서가 제출되는 달의 익월의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까지 매일 제출된다 (Intrastat 신고서는 electronic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Intrastat 신고서를 미제출시에는 최대 백만 CZK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 세율

대부분의 과세공급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20%이다. 덧붙여,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된다.

- social housing의 목적으로 의도된 주거용 건물과 아파트와 관련된 건설용역 (social housing의 목적으로 의도된 아파트와 주택의 특정한 정의가 적용됨)
- 주거용 건물과 아파트의 재건축과 수리
- 하수용역, 물 공급
- 건강 및 사회용역
- 공공운송용역
- 식료품
- 서적, 책자, 광고가 내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신문과 잡지, 그림책과 어린이용 서적
- 특정 건강제품과 용역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 장작

부가세납세자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확한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정보를 세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마. 영세율

아래에 언급된 공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이지만 공급업자가 관련 매입부가세를 공제할 권리가 있다.

○ Intra-community 재화의 공급

만약 재화가 다른 EU 회원국에 부가세등록이 된 고객에게 팔렸고, 매출이 체코

에서(운송이 공급업자나 고객에 의해서든) 다른 EU 회원국으로의 재화의 이전과 관련된 것이면 공급은 영세율(exempt with credit : 매출부가세는 “0”이며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한 것을 의미)이 적용되는 intra-Community 공급이다. 공급자는 고객의 부가세번호를 invoice에 표시해야 한다. 체코로부터 재화가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화가 세무조사 목적상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재화가 다른 EU 회원국에 부가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객에게 매출 및 양도되고 도착지 EU 회원국의 .distance selling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체코 부가세가 계상되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공급자가 다른 회원국에 부가세를 등록해야 할 것이다.

○ 재화의 수출

EU이외의 고객에 대한 재화의 수출은 아래 조건들을 만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재화가 수출, 외부처리, 운송을 위한 통관절차를 통해 방출되거나, EU 관세 영역으로부터 재화의 재수출을 위한 관세승인 처리를 통해 방출되거나, 체코 내 무관세 창고 또는 구역에 놓여지는 경우
- 운송이 체코수출업자나 그 수출업자에 의해 승인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 운송이 고객(고객이 체코 내에 등록사무소, 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또는 고객에 의해 승인된 제3자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재화수출의 증명으로써 부가세납세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재화가 수출되었거나 체코 내 무관세 창고 또는 구역에 재화가 위치해 있음을 확인 받은 공식문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면세

아래 항목들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 보험용역
- 금융용역

- 우편용역
- 도박, 복권 등
- 교육
- 건강 및 복지용역
- TV와 라디오방송
- 부가세법에 명시된 특정 재화와 용역의 공급
- 토지(개발용 토지를 제외)의 양도
- 건설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사용허가를 승인 받거나 자산을 최초로 사용한 날 (둘 중 빠른 날) 이후 3년이 지난 고정자산(건물, 아파트, 비거주용 부동산)의 양도(금융리스를 포함)
- 토지와 건물(단기 건물리스, 주차장리스, 귀중품보관소 리스를 제외한)의 리스 납세자는 부가세가 등록된 다른 회사/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의 임대에 대해 부가세 청구를 선택해도 된다.

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매입부가세 공제

체크부가세납세자는 다른 부가세납세자의 과세공급이나 수입재화와 관련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것들은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될 경우 가능하다.

○ 매입부가세 완전공제

부가세납세자는 아래와 관련된 과세공급에 대해서만 모든 매입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다.

- 체크 매출부가세 의무가 있는 과세공급
- 타 EU 회원국으로의 재화의 유출이나 제3국으로의 재화의 수출과 같은 영세율 공급
- 만약 체크 내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매입부가세가 공제되었을 것인 체크외부가 공급장소인 공급

- 만약 체코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비 EU 회사/개인에게 공급되거나, 공급이 재화의 수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할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면세공급
- 체코부가세법상 명시된 특정 비부가세 공급(예, 회사의 매각, 광고품의 공급)
부가세납세자는 invoice(부가세서류)를 통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부가세법은 invoice의 필요내용의 상세기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부가세 납세자는 과세서류(인보이스)를 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신고서를 통해 국내 공급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부가세는 과세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 종료 후 3년 이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 매입부가세 불공제

- 부가세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한다
- 과세공급이 특정 금융용역이 비 EU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용역, 보험, 부동산리스, 교육이나 건강용역 등과 같은 부가세 면세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공제 불가능한 범위까지의 접대비에 사용된 과세공급.

○ 매입부가세 부분공제

부가세납세자는 두 가지 유형의 공급(즉, 매입부가세를 완전 공제받을 수 있는 공급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공급)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 부분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한 금액은 총공급에서 사용 가능한 공급의 비율에 기초한다.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만약 자산이 사용되는 목적(매입부가세 완전/부분/미공제)이 취득한 해의 이후 5년 동안 변경된다면 부가세납세자는 매입부가세 청구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체코는 다른 EU 회원국에 부가세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들 또는 비 EU 회사들을 위한 부가세환급과 관련하여 EU 제9조 및 13조 Directives의 일반규정을 시행

하고 있다.

EU 실체에 대한 체코 부가세 환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되고 부가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부가세청구가 제출되는 기간 동안 청구자는 체코 내에 등록사무소, 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없고 영세율 또는 리버스 차지가 적용되는 공급(예, 재화의 수입, 부가세를 공제할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공급, 재화의 수출과 직접 관련된 운송 및 용역공급, 리버스 차지 적용 공급).
- 재화나 용역이 청구자의 사업을 위해 체코 내에서 구매되었어야 한다.

부가세환급은 체코납세자에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에서 청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환급은 매입부가세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부가세환급은 회사/개인이 등록사무소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전자적으로 청구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해의 익년 9월 30일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부가세 환급 신청서

- 체코어로 되어 있을 것
- 체코 부가세 납세자에 의해 발행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증명하는 세무서류의 전자사본에 의해 증명될 것 이는 탄화수소연료의 경우 EUR 250, 기타 재화와 용역의 경우 EUR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신청자가 체코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 대해(상기에서 참조된 예외사항은 제외) 서면 신고서(체코어)가 동반될 것, 그리고
- 청구자의 은행계좌 등의 공식확인서 같은 추가 문서가 동반될 것.

만약 조건이 충족되고 신청자가 모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한다면 부가세는 신청서가 제출되고 세무기관에 의해 제기된 질문 등이 해소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환급될 것이다. 만약 세무서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다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2010년 초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무서가 실무적으로 이러한

마감기한을 충족할 지 모른다.

부가세환급은 환급이 적용되는 기간은 적어도 3개월이 되어야 하고, 1년 이하여야 하며, 금액은 적어도 EUR 400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EUR 400 미만의 환급액은 환급적용기간이 1년이고 적어도 청구금액이 EUR 50일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

비 EU 회사들은 프라하 1 세무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코 부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은 통신비, 연료비, 택시요금, 엔터테인먼트, 여비나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다. 그러나, 환급이 상호호혜주의에 기초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스위스에 근거한 회사들에 의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요건

- 체코어로 되어 있을 것
- 체코 부가세 납세자에 의해 발행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증명하는 원본 세무서류에 의해 증명될 것. (단순화된 세무서류의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 등록이 이루어진 나라의 세무서가 발행한, 신청자가 제3국에 부가가치세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확인서가 동반될 것
- 체코 내에서 신청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더라는(상기에서 참조된 예외사항은 제외) 신고서가 동반될 것
- 청구자의 은행계좌 등의 공식확인서 같은 추가 문서가 동반될 것.

CZK 7,000미만인 환급액은 환급적용기간이 1년이고 적어도 청구금액이 CZK 1,000일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

○ 2011년 4월 1일부로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내용

2011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회수불가(대손)채권에 대한 부가세 환급 : 채무자가 파산중인 특정 만기 경과 채권에 대한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

- 특정 국내 공급에 대한 reverse charge 적용: 금, 고철 및 폐기물의 공급과 탄소배출권의 거래에 적용되며, 2012년부터는 건설 및 조립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적용됨.
-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동 납부의무는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공급받은 과세공급가액이 거래 당위성에 비추어 명백하게 적정가격과 다른 경우 또한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 과세당국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소득세법은 이전가격과 과소자본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전가격은 만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동의된 가격이 제3자 가격이 아니고 차이가 적절하게 정당화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과세기준을 수정할 것을 진술한 간단한 조항에 의해 다루어진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과세당국으로 APA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거래건당 10,000 CZK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의 조항 이외에 재무부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D-332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적용 가능하다고 확인한다
- D-333은 APA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 D-334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제시한다. 그것은 2005년 11월 EU연합 이전가격 포럼에서 발행된 행동강령에 기초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과세당국이 그것들을 따라야 하므로 납세자 들에게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이다. 과소자본세제는 차입자가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와 다른 차입비용의 공제가능성을 제한한다.

동 규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차입자 자본의 4배(차입자가 은행이나 보험회사면 6배)를 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등에서 발생한 자본비용은 세무상 불공제된다.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 등과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는 일반원칙에 따라 전부 공제 가능하다. 다만,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간주되는 back-to-back 차입금 (특수관계사가 특수관계사가 아닌 자에게 차입금 등을 제공하되 동 자금이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구조)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 이자나 기타 소득이 차입자의 수익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차입금 등에 대한 모든 자본비용은 세무상 불공제된다.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소득(예, 이자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본비용은 그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비 EU 또는 EEA 거주자인 상대방과 관련된 이전가격 또는 과세자본세제 조정으로부터 수익이 증가한다면 이는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이는 적용 가능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의 규정에 의해 감소되어지는 배당원천세가 적용된다.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체코 내 소재지가 있는 회사들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체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소재지는 등록된 사무소나 회사의 효과적인 경영의 장소로 정의된다. 그러한 회사들은 체코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른 회사들(비거주자)은 이중과세조약의 적용을 받고 체코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체코거주자인 회사들의 국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체코 내에서 과세되며 이중과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체코거주자의 해외지점이나 해외고정사업장의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회사로부터의 배당은 모-자회사 지시문(EU규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15%의 세율로 개별 과세되는 소득이다.

그러나 어떤 이중과세조약 하에서는 체코거주자의 해외 소득은 체코세금이 면제된다. 그러한 경우 동 소득에 대한 비용은 불공제된다. 체코세금의 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른 나라와 이중과세조약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은 단지 비용으로 간주된다.

비거주자의 체코원천소득은 주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체코 내 고정사업장 소득
- 체코 내에서 수행한 종속 활동(고용)에서 발생한 소득
- 체코 내에서 수행한 용역소득
- 체코 내에 소재한 부동산 양도 및 임대소득
- 체코 내 연주, 연기 및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로열티, 배당, 기타소득분배, 이자 및 리스임대소득
- 체코 내 복권 및 도박소득
- 체코 내 이혼별거수당과 연금
- 감자차익
- 양도에 의해 획득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채권금액
- 계약관계에 따른 벌과금

- 체코거주 회사의 지분양도소득으로서 국내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이러한 세금부담은 적용 가능한 과세조약에 의해 일정부분 완화된다. 특히 조약이 있는 경우 그러하다.

- 용역소득은 만약 용역공급자가 체코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보통 과세될 것임
- 근로소득은 만약 근로자가 체코회사나 외국기업의 체코 고정사업장에 의해 고용되거나 체코 내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할 경우에만 보통 과세될 것임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세를 징수하며 예는 다음과 같다.

- 배당소득 - 15 퍼센트,
- 로얄티(일반적으로 리스임대료 포함) - 15 퍼센트,
- 체코 내 공급된 용역 - 15 퍼센트,
- 연예인 및 스포츠맨 활동 - 15 퍼센트.

원천징수세는 이중과세조약에 의해 일반적으로 감소되는 최종세액이다.

다른 EU와 EEA 국가의 거주자는 원천세 의무가 있는 다른 유형의 소득(예, 이자, 로얄티, 프리랜스 업무)과 관련해서 소득세신고서를 신고하고 관련 비용들(이것은 배당에 대한 원천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천세는 선납세로 간주된다. 이는 원천세가 총액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U 모-자회사 지시문이 체코에서 실행되었으며 이는 EU 회원국이 거주지인 모회사에 체코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체코 회사 간 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기업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에도 또한 적용된다.

EU 이자로얄티 지시문은 체코 내에서 또한 실행되었으나 체코는 로얄티에 관하여 2011년까지 감손을 부여 받았다. 결과적으로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내 거주자인 관계회사들에 지불된 이자와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원천세가 면제되나 Advance clearance procedure(과세당국의 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 의무가 있다.

체코는 또한 EU 저축 지시문을 실행했으며 이는 체코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을 말한다.

비EU 또는 비EEA(유럽경제지역) 거주자에 지급되는 다른 유형의 소득, 특히 고정사업장, 부동산, 지분매각 등의 경우 원천세를 납부하지만 이는 이로써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납부세액과 관련해서 선납한 것이다. 이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10%를 부과하나(지분매각과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의 경우는 1%) 과세당국과의 사전협약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

체코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번호	지급받는 자의 거주국	발효연도	배당 (%)	배당에 대한 감면세율 (최소보유지분율) (%)	이자 (%)	로열티 (%)
1	Albania	1997	15	5 [25]	5/01	10
2	Armenia	2010	10	-	10/5 ₈ /0 ₁	10/5 ₂
3	Australia	1996	15	5 [20]	10/01	10
4	Austria	2008	10	0 [10]	0	5/0 ₂
5	Azerbaijan	2007	8	-	10 ₁	10
6	Belgium	2001	15	5 [25]	10/01	5/5 _{EQ} /0 ₄
7	Belarus	1999	10	-	5/01	10
8	Bosnia and Herzegovina	2011	5	-	0	10/0 ₂
9	Brazil	1991	15	-	15/10/0 ₁	25 _{TM} /15
10	Bulgaria	2000	10	-	10	10
11	Canada	2003	15	5 [10]	10/01	10
12	China	1988	10	-	10/01	10
13	Croatia	2001	5	-	0	10
14	Cyprus	2010	5	0 [10]	0	10/0 ₂
15	Denmark	1983	15	-	0	5/0 ₂
16	Egypt	1996	15	5 [25]	15/0 ₁	15
17	Estonia	1996	15	5 [25]	10/0 ₁	10
18	Ethiopia	2009	10	-	10/0 ₁	10
19	Finland	1996	15	5 [25]	0	10/5 _{OL} /1 _{FL} /0 ₂
20	France	1975	10	0 [25]	0	10/5 _{EQ} /0 ₂

번호	지급받는 자의 거주국	발효연도	배당 (%)	배당에 대한 감면세율 (최소보유지분율) (%)	이자 (%)	로열티 (%)
21	Georgia	2008	10	5 [25]	8/0 ₁	10/5 _{EQ} /0 ₂
22	Germany	1984	15	5 [25]	0	5
23	Greece	1990	15	-	10/0 ₁	10/0 ₂
24	Hungary	1995	15	5 [25]	0	10
25	Iceland	2001	15	5 [25]	0	10
26	India	2000	10	-	10/0 ₁	10
27	Indonesia	1997	15	10 [20]	12.5/0 ₁	12.5
28	Ireland	1997	15	5 [25]	0	10
29	Israel	1995	15	5 [15]	10/0 ₁	5
30	Italy	1985	15	-	0	5/0 ₂
31	Japan	1979	15	10 [25]	10/0 ₁	10/0 ₂
32	Jordan	2008	10	-	10/0 ₁	10
33	Kazakhstan	2000	10	-	10/0 ₁	10
34	Kuwait	2005	5	-	0	10
35	Latvia	1996	15	5 [25]	10/0 ₁	10
36	Lebanon	2001	5	-	0	5 _{EQ} /10
37	Lithuania	1996	15	5 [25]	10/0 ₁	10
38	Luxembourg	1993	15	5 [25]	0	10/0 ₂
39	Macedonia	2003	15	5 [25]	0	10
40	Malaysia	1999	10	-	12/0 ₁	12

번호	지급받는 자의 거주국	발효연도	배당 (%)	배당에 대한 감면세율 (최소보유지분율) (%)	이자 (%)	로열티 (%)
41	Malta	1998	5	-	0	5
42	Mexico	2003	10	-	10/0 ₁	10
43	Moldova	2001	15	5 [25]	5	10
44	Mongolia	1999	10	-	10/0 ₁	10
45	Morocco	2007	10	-	10 ₁	10
46	Netherlands	1975	10	0[25]	0	5
47	New Zealand	2009	15	-	10 ₁	10
48	Nigeria	1991	15	12.5 [10]	15/0 ₁	15
49	Norway	1980	15	0 [10]	0	5/0 ₂
50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10	-	10/0 ₁	10
51	Philippines	2004	15	10 [10]	10/0 ₁	10/15 ₅
52	Poland	1994	10	5 [20]	10/0 ₁	5
53	Portugal	1998	15	10 [25]	10/0 ₁	10
54	Romania	1995	10	-	7/0 ₁	10
55	Russia	1998	10	-	0	10
56	Serbia and Montenegro	2006	10	-	10/0 ₁	10/5 ₂
57	Singapore	1999	5	-	0	10
58	Slovakia	2004	15	5 [10]	0	10/0 ₂
59	Slovenia	1999	15	5 [25]	5/0 ₁	10
60	South Africa	1998	15	5 [25]	0	10



번호	지급받는 자의 거주국	발효연도	배당 (%)	배당에 대한 감면세율 (최소보유지분율) (%)	이자 (%)	로열티 (%)
61	South Korea	1995	10	5 [25]	10/0 ₁	10/0 ₂
62	Spain	1982	15	5 [25]	0	5 ₃ /0 ₂ /5 ₅
63	Sri Lanka	1979	15	-	10/0 ₁	10/0 ₂
64	Sweden	1981	10	0 [25]	0	5/0 ₂
65	Switzerland	1996	15	5 [25]	0	5 SPEC
66	Syrian Arab Republic	2010	10	-	10/0 ₁	12
67	Tajikistan	2008	5	-	7/0 ₁	10
68	Thailand	1996	10	-	10/0 ₁	15/10 ₃ /5 ₂ /15 ₅
69	Tunisia	1992	15	10 [25]	12/0 ₁	15 ₃ /5 ₂
70	Turkey	2004	10	-	10/0 ₁	10
71	Ukraine	2000	15	5 [25]	5/0 ₁	10
72	United Arab Emirates	1998	5	0 [25] ⁶	0	10
73	United Kingdom	1992	15	5 [25]	0	10/0 ₂
74	United States	1994	15	5 [10]	0	10/0 ₂
75	Uzbekistan	2001	10	-	5/0 ₁	10
76	Venezuela	1998	10	5 [15]	10/0 ₁	12
77	Vietnam	1999	10	-	10/0 ₁	10

※ 각주 설명

- 1 : 특정 정부차입금 또는 투자에 대한 면제
- 2 : 문화 로열티(Cultural royalties)
- 3 : 산업면허 수수료(Industrial licence fees)
- 4 : 2004년 1월 1일부로 문화 로열티는 면제(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10% 적용)
- 5 : 영화필름 혹은 TV 또는 라디오 방송 필름 관련 저작권료와 관련된 로열티
- 6 : 배당수익자가 정부 혹은 정부가 25%이상 소유한 기업인 경우
- 7 : 이디오피아의 경우 2008년 7월 8일부로 유효
- 8 :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면제
- TM : 등록상표(Trademark)에 대한 로열티만 해당
- FL : 금융리스
- OL : 운용리스
- EQ : 설비사용에 대한 로열티
- SPEC : 체코-스위스 이중과세 방지협약 에 대한 의정서 2조에 따라 5% 원천 세율 적용

5 Beneficial ownership

체코에 의해 명시적으로 체결된 많은 이중과세조약은 유익한 소유자의 소득에 대한 혜택을 제한한다.

체코 내 투자자가 자국의 과세규정 하에서 투명한 외국실체이거나 신탁인 상황에서는 체코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과 이중과세조약을 적용하여 그 투명성을 존중한다. 체코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실체를 통하여 투자의 궁극적인 수혜소유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것이다.

6 체코의 조세행정

조세행정은 기타 법률상의 특정절차와 함께 주로 조세법을 따른다. 2011년부터 조세법이 세법상 행정 절차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조세행정상의 폭넓은 변화를 도입하였다.

- 조세신고 기한 변경
- 지연납부에 대한 벌과금
- 세부담을 줄이거나 결손금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의 제한
- 새로운 세무조사 규정

모든 체코거주자인 회사, limited 파트너십, 비거주자인 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파트너들이 파트너십 수익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선언한 general파트너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 과세소득이 CZK 15,000을 넘는 개인은 소득이 비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코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지점의 피고용인은 그들이 다른 과세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세무상 결손을 신고하는

자들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다. 그래서 역년 이외의 종료기간을 채택한 법적실체들을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은 역년이며, 그래서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은 3월 31일이다. 제출기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납세자가 법정감사를 받는 경우 또는
- 납세자가 그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등록된 세무 adviser를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는 이전납부세액에 기초하여 연중 예납하는 구조로 징수된다. 납부기한도 신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하다. 세금은 세무서에서 받는 때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세당국은 과세표준이나 조세납부액의 정확한 결정을 위한 결정적인 기타조건들을 세우거나 검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조세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정규 과세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되거나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나 세무조사와 같은 특수한 경우 추가 조세부과 기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세법은 조세범죄와 관련한 경우 조세부과기한에 대하여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조세부과 기한이 도래한 이후라도 추가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납세자가 결손금을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가 수행될 기간은 결손금이 사용될 때까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결손금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연장된 기한이 적용된다면 세무조사는 세무신고 기한 이후 15년까지 수행될 수 있다.

만약, 조세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제기 된다면 추징세액에 대한 납부는 실제 법적인 효력이 생길 때까지 이월되지만, 동 추징세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되어 증가된다.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의 이자는 납부 기한 후 5일째부터 기산되며 최초 5년간은 CNB(체코중앙은행) Repo rate + 14%로 평가되며 이후로는 이자가 계상되지 않는다. 반면 과세 당국에 의해 평가된 추가납부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만약 부가세환급액이 감소한다면 가산세는 감소된 금액의 20%이다.

만약 결손금이 감소한다면 감소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수정 신고서에 의해(자발적으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면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만이 지불되어질 것이다.

7

기타 주요 세법

가. 관세

2004년 5월 1일부터 체코는 EU의 회원국이 되었고 관세문제는 EU법을 따른다. 체코는 체코제조업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인 재화를 수입, 가공, 수출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IPR(Inward Processing Regime)를 따른다.

IPR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수입품목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관세환급시스템 이는 수입 품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수반함 이후 수입된 재화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의 형태로 체코에서 수출된다면 관세는 직후 환급됨(부가가치세도 체코 매입부가세처럼 환급됨) 또는
2. 처음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수입품목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의 형태로 체코에서 수출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의 유예 시스템
두 가지 모두 기록되는 수입업자는 원재료를 받는 제조업자이다. 재화의 소유권은 이와는 상관없다. IPR 하에서 체코산 원재료가 가공된 외국산 품목에 포함하여 가공될 수 있다. IPR의 적용은 지방관세청과 협상되어야 한다. 제도가 복잡하므로 최적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세

부동산세는 체코 내 고정자산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다. 다른 세율이 미개발 토지, 농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 요율을 사용하며 건물면적에 기초한다.

부동산세 적용 요율

구 분	CZK/m ²
거주용 및 농업용	2
산업용	10
기타 사업용	10

스퀘어 미터당 CZK 0.75의 추가금액이 건물의 각 층(1층 이상으로)에 부과된다.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는 간주가치의 0.75%이다. 특별한 요율이 삼림, 호수 및 연못에 적용된다.

다른 유형의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은 면적에 기초하며 요율은 건설용지 스퀘어 미터당 CZK 1이며 다른 경우는 CZK 0.20이다.

요율은 자산의 위치에 따라 1에서 5까지의 계수를 곱한다. 게다가, 세금은 관련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2에서5까지의 또 다른 계수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부동산세는 법인세목적상 공제 가능하다.

다. 부동산 양도세

매수가액과 감정가액 중 높은 가액의 3%인 양도세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고정 자산의 모든 양도에 대해 판매자에 의해 납부된다. 특별한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세금은 판매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세금은 법인세목적상 공제 가능하다.

라.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배우자 또는 친족이 아닌 사망인의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특정한 면제항목과 함께 만약 사망인이 체코 내 고정거주지가 있는 체코시민권자이면 세금은 모든 자산의 순자산가치에 부과된다(해외부동산은 제외). 그렇지 않으면 체코에 소재한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증여세는 적격한 배우자나 친족 관계가 없는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부과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수증자이나 만약 증여자가 체코 거주자이고 수증자는 아니라면, 세금은 증여자에 의해 납부된다.

체코 증여세율

금액 (CZK)	세율
1 백만까지	7%
1 백만에서 2 백만까지	9%
2 백만에서 5 백만까지	12%
5 백만에서 7 백만까지	15%
7 백만에서 10 백만까지	18%
10 백만에서 20 백만까지	21%
20 백만에서 30 백만까지	25%
30 백만에서 40 백만까지	30%
40 백만에서 50 백만까지	35%
50 백만 이상	40%

상속세는 동 세율에서 50% 감소한다.



제 4 장 체코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2. 고용정책

1 투자정책

가. 체코공화국의 투자인센티브

체코는 제조산업에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프라하를 제외한 체코의 모든 지역에서 세금감면과 현금보조의 방법으로 지원된다. 인센티브는 정부보조로 간주되므로 전적으로 EU 정부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지급된다.

나. 제조부문을 위한 투자인센티브

본 인센티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새로운 제조공장의 설립과 기존 공장의 확장에 대해 5년까지 소득세 감면
-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업훈련보조금 형태의 고용에 대한 보조(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에만 해당함)
-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 매입

2011년 하반기 이후에 현재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법이 바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임.

○ 일반조건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일반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투자자가 제조공장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공장을 확장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제조활동이 해당되지만, 아래 항목들은 제조활동으로 간주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광물 추출
 - 전력생산 및 공급
 - 가스분배
 - 수도처리와 분배
 - 건설

- 차량수리
 - 재화와 용역 무역업
2. 관세표 84장, 85장, 90장에 분류된 기계장치의 취득. 기계장치는(미사용) 신제품이어야 하며 취득시점에 제조된지 2년 미만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계장치는 시장가격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생산기계장치는 유무형자산의 총 투자금액의 최소 60%를 차지해야 한다.
 3. 프로젝트가 체코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 유무형자산에 대한 최소투자액은 보통 100백만 CZK이어야 그 중 최소 50백만 CZK은 자기자본으로 조달 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가 체코 평균 실업률보다 각각 최소한 25%와 50%를 넘는 실업률을 가진 지역에 이루어지고 자금조달 필요조건이 이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최소 투자금액인 100백만 CZK은 60백만 CZK 및 50백만 CZK으로 감소한다.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자산들은 매입을 통해 취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리스를 통한 자산은 위 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5. 이러한 조건들은 인센티브가 공식적으로 부여된 날부터 3년 내에 충족되어야 한다. 몇몇 경우에 이 기간은 서면신청에 기초하여 2년이 연장될 수 있다. 연장은 정당한 경우에만 산업무역부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예, 투자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하지 못한 지연.
 6. 건설작업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자산취득은 체코인베스트에 인센티브신청서(의향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해 체코인베스트가 프로젝트의 적격성에 관해 발행한 확인서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7. 정부보조금이 청구된 투자는(적어도 5번 조건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최소 5년간 또는 실제로 청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신규창출 고용수는 고용창출보조금이 최초로 지급된 때로부터 적어도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다. 소득세 감면

○ 개요

청구될 수 있는 법인세감면액 계산은 새로운 회사(공장)의 처리가 확장된 공장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회사의 경우에는 납세자는 순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확장된 공장의 경우에는 법인세감면 대상금액은 신규 회사에 대한 이용 가능한 법인세감면과 법인세감면을 청구한 첫 해 이전 2개년의 법인세부담액 중 더 큰 금액과의 차이이다. 이 때 후자의 금액은 산업가격물가와 현재 법인세율에 연동하여 수정된다.

이 공식은 법인세감면 대상금액을 확장으로 인한 추가이익에 한정하려는 개략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감면은 제출된 본래 법인세신고서상 이익으로부터만 산정된다. 만약 이후에 더 높은 법인세부담액이 과세된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시시점과 만기

법인세감면이 가능한 최초기간은 인센티브조건이 충족된 기간이며 이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때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3년 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법인세 감면신청 연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인세감면은 언제 처음 발생하든지 간에 최대가능 정부보조금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하는 5과세연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 조건

법인세감면을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위에서 열거된 일반조건들과 소득세법상 특별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공제항목들을 공제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방법(즉, 정액법, 가속상각법 또는 기타방법)이 납세자의 재량일 지라도 모든 감가상각비

- 채권에 대해 공제 가능한 총당금이 계상되어야 한다.
 - 이월결손금은 이익이 발생한 첫 과세연도에 공제되어야 한다.
2. 파산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과 특정자산을 제외하고는 납세자는 체코 내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하는 유형고정자산의 최초 소유자이어야 한다.
 3. 법인세감면이 청구되는 기간 동안 납세자는 해산하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거나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면 안 된다.
 4. 납세자는 특수관계자와의 제3가 가격이 아닌 거래를 통하거나 그들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특수관계자의 자산의 이전 등을 통해 이익을 부풀릴 수 없다.
 5.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금액이상을 등록 유무형고정자산으로 취득하고 기록해야 한다.

○ 제재사항

만약 납세자가 투자인센티브법상 일반조건이나 소득세법상 특수조건(모든 이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제외)을 준수하지 못하면 법인세 감면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고 이미 지급된 감면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법인세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위에서 언급된 공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면 법인세 감면은 감소되며 공제금액에 따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동 금액은 적절한 벌과금과 함께 관련당국에 납부되어야 한다.

라. 고용 창출

실업률이 지난 두 반기 동안 전국평균보다 50% 이상 높았던 지역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회사에게 현금보조금이 부여될 것이다. 체코와 다른 EU국가의 노동자가 이 계산식에 해당될 것이다. 동 정부보조는 신규고용 창출 건당 50,000 CZK이다. 만약 1,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면 인근지역의 실업률도 고려될 것이다. 실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종류의 정부보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 종업원 교육 및 재교육

종업원 교육 및 재교육 현금보조금은 발생한 비용의 일부 환급의 형태로 회사에 제공될 것이다. 보조금은 종업원 교육 및 재교육 적격비용의 35%를 지급한다. 이 또한 실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종류의 정부보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 건설부지의 매입

이 인센티브의 실제 혜택은 토지소유주(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에 달려 있다. 시장가격과 실제매입가격의 차이가 인센티브로 간주된다.

사. 정부보조금의 허용 가능한 수준

법인세감면, 고용창출보조금 및 토지의 할인매입혜택의 총합계가 최대 허용 가능한 정부보조금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보조금의 최대허용가능 수준은 산업무역부에 의해 개별 투자프로젝트별로 계산될 것이다. 그 금액은 유럽연합에 의해 수립된 규정에 기초하고 체코의 개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부보조금 최대 가능 액은 적격한 비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와 장비, 특정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의 지역지도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정부보조금 수준은 어떤 지역에서는 더 낮다. (예를 들면, 남서지역 : 30%). 몇몇 경우에는(5천만 EUR를 초과하는 투자나 정부 결의에 의해 결정된 선호 제조산업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과 같은. 이러한 카테고리는 예를 들면 전자,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 등의 생산으로 정의된다) 최대 가능 액이 더 감소될 수 있다. 중간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최대 가능 액이 10% 까지, 소규모 회사는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

법인세감면의 경우에는 적용비율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 연간누적개념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조건하에서는(예를 들면 총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익이 실현된다면) 주어진 기간의 세부담이 그 기간에 이용 가능한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 투자인센티브 신청

인센티브 획득과정은 아래 사항들을 수반한다.

- 투자를 할 의도가 있는 자에 의한 최초 신청서 제출
: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설립될 체코회사의 주주일 것임
- 관련 정부기관의 신청서 검토
- 다음 단계인 인센티브의 승인, 제안
- 실제로 이를 청구할 자에 의한 인센티브 공식 신청
: 이는 투자자 이외의 자여도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자의 체코자회사가 인센티브가 제공된 이후 사업개시
- 최종검토와 승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중요한 이슈들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간의 관점에서 인센티브는 미래의 투자에 대해서만 부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신청서가 프로젝트 시작 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실제 건설작업 또는 기계장치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단계들, 예를 들면 기계장치를 위한 구속력 있는 주문발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EU 구조자금

체코공화국(프라하제외)에서 설립된 기업체는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 하에서 EU 구조조정 기금으로부터 또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대부분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운영프로그램 기업과 혁신,
- 운영프로그램 인적자원과 고용.
- 운영프로그램 환경.

비록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또한 대기업에도 해당이 된다.

모든 운영프로그램들은 2007-2013 기간 동안 운영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기간 동안 유사한 조건이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각의 프로그램 하에서 일련의 다른 보조금이 이용가능하며 조건들은 주기적으로 바뀐다. 게다가, 새로운 신청은 미리 공표된 특정기간에만 인정된다. 보조금의 이용가능성은 신청시기와 세부적인 조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개시 초기단계에 검토되어야 한다.

EU 구조기금에서 부여되는 보조금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로써 동일한 정부보조금 규칙과 한계가 적용된다.

2 고용정책

가. 일반사항

체코는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식자율은 98% 이상이다. 고용법은 노동법 및 다수의 정부법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고용주에 의해 종업원이 체코 내에서 용역의 국가 간 공급의 일부로써 일하기 위해 보내지는 경우, 체코 노동법규정은 다음 사항들을 적용 한다

- 최대근로시간과 휴식기간의 최소시간
- 최소 연차휴가 부여
- 최소급여와 초과근무 요율
- 직업상 안전과 건강
- 임신한 직원을 위한 근로조건
- 여성 및 미성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조건
- 남성과 여성 종업원의 동등한 간주 (차별 금지)
- 직업소개소와 관련한 근로조건

그러나 체코 노동법은 만약 모국인 EU 국가의 법령이 종업원에게 좀 더 유리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정규 근로 주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30분이며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보다 일찍 시작하기도 한다.

1936년 이전 출생자의 정년은 남성은 60세며 여성은 자녀의 수에 따라 53-57세이다. 1936년에서 1968년 사이 출생자의 정년은 남성 및 무자녀 여성은 65세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62-64세로 점차 연장될 것이다. 1968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남성과 무자녀 여성의 경우 6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62-64세가 된다.

나. 고용 계약

고용주는 그들의 종업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계약서를 통해 종업원의 권리, 의무 및 보수에 대해 종업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서는 업무의 종류, 종업원이 근로를 개시할 날짜, 근로가 이루어질 장소를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으면 안 되며 서면 상으로 동의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서는 계약서상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기간이 고정된 고용계약서는 2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고용주를 위해 수행될 업무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소와 그들의 종업원간에 체결된 고정기간 고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개소와의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은 그들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다른 고용주를 위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고용주가 종업원의 업무를 조직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

종업원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고용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관련이 없다. 무기한 또는 고정기간으로 체결된 고용계약은 아래의 이유로 종료될 수 있다.

- 동의에 의해
- 통지에 의해
- 즉각적인 해지에 의해
- 수습기간 동안 해지에 의해

고정기간 고용계약은 또한 기간의 만료 시 종료된다.

동의에 의한 해지는 서면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고용주나 종업원은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배달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개시한다. 고용주와 종업원을 위한 통지기간은 적어도 2개월이며, 종업원은 이유를 언급할 필요 없이 통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이는 다음 이유 중 하나이어야 한다.

- a) 고용주(혹은 고용주의 부서)의 청산이나 사업수행의 중단
- b) 고용주(혹은 회사나 조직의 일부)의 이전, 재배치
- c) 조직의 변화
- d) 종업원이 오랜 기간의 건강상 이유로 일할 수 없을 때
- e) 종업원이 충분한 자격이 안 될 때
- f) 종업원이 심각하게 규율을 어겼을 때

고용계약이 a)에서 c)의 이유들로 종료된 경우에 고용주는 최소 3개월의 퇴직수당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해지조건이 장애인, 임산부, 취약계층을 부양 중인 근로자 등에 적용된다. 특별해지조건, 해지수당과 다른 조건들은 만약 하나가 시행 중이라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도 된다.

영여노동자 일시 해고를 위한 보상은 법률상 최소 3개월 평균 급여로 정해져 있다. 실무적으로 금액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 회사마다 달라진다.

수습기간 동안 고용계약은 양 당사자의 어떤 이유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될 수 있다. 해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종료일 이전 최소한 3일 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다. 대량해고

만약 고용주가 30일 기간 내에 위 a)에서 c)에 언급된 특정한 이유를 통해 노동법에 정의된 것으로서 특정 종업원 수와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대량해고로 간주된다. 2개월 통지기간이 대량해고에 적용된다. 그러나 대량해고에 의해 영향 받는 종업원의 고용관계는, 종업원이 종료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방노동청(아래 참조)에 해고에 대한 최종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보낸 날로부터 연속하는 30일 이전에는 종결되지 않는다.

통지해고가 있기 최소 30일 전에 고용주는 서면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에 알리고 일시해고의 범위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과 협상을 수행

하여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나 노동협회가 없으면 고용주는 모든 영향을 받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고용주는 또한 일시해고를 지방노동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청에 일시해고에 대한 최종결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협회의와의 협상결과와 일시해고의 최종 수 및 합의 등을 포함한다.

라. 노동 조합

노동조합은 국가적 수준에서 단체협상을 수행한다. 노동조합, 고용주와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3자 협의회는 매년 노동이슈를 토론하기 위해 만난다.

마. 고용 확인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모든 종업원들 또는 그들의 새로운 종업원에게 고용의 증거(potrzeni o zam.stnani)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고용기간, 휴일 및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료 지급,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의무, 고용기간 동안 종업원의 연간 급여 상세내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종업원이 고용주가 그들에게 추천서(pracovniposudek)를 제공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의 고용이 종료되기 2달보다 더 빠르지 않은, 15일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바. 휴일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역년 동안 최소 60 연속일 동안 지속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계약이 일년 미만 지속된 경우, 연간휴일의 1/12이 동일한 고용주와의 계속된 고용이 될 경우 매달 계상된다.

단체협약이나 내부규정에 의해 증가되지 않는다면 최소휴일기간은 연간 4주이다. 공무원들은 연간 5주를 부여 받는다. 휴일수당은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사.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고용주와 종업원이 함께 납부하는 2개의 주요한 사회보장체계가 있다. 사회보장보험시스템으로부터의 급부는 전형적으로 다음을 포함 한다.

- 연금
- 현금급부
 - a) 병가
 - b) 가족의 건강치료에 대한 급부
 - c) 육아수당
 - d) 사회수당
 - e) 사망수당
 - f) 출산수당



부 록

- 부록 1.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부록 2. 주요 수출입 동향
- 부록 3. 자유무역협정 현황
- 부록 4. 다국적 대기업 적용 보조금 프로그램 리스트
- 부록 5. 조세협약 (한국-체코)
- 부록 6. 회계와 감사
- 부록 7. 관세 및 수입규제 제도
- 부록 8. 주요 인증제도
- 부록 9. 지적 재산권
- 부록10. 노무관리
- 부록11. 진출 형태에 따른 회사 설립절차
- 부록12. 투자입지 선정 및 투자환경
- 부록13. 무역과 투자 시 애로사항
- 부록14. 일반적인 상관습
- 부록15. 시장특성
- 부록16. 체코 정착 가이드

부록 1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체코의 주요 경제 동향

체코 경제가 2010년 3/4분기의 2.4% 성장에 이어 4/4분기에도 3.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의견을 전했다.

체코 중앙은행은 2/4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6%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특히 3/4분기의 수출증가에 이어 4/4분기에는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성장의 동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기 활황세기 일반 소비시장에까지 확산됨으로써 2011년에는 국제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대의 안정적 성장률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0년 4/4분기 체코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3%로 3/4분기의 11.9% 증가에 이어 활황세를 유지하였으며, 산업부문별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문과 금속산업 부문 등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부문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졌던 반면, 식음료 산업, 가구산업 및 비금속 산업부문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산업부문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은 약 1.0%의 감소세를 보여 금융위기 기간 동안 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생산 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체코 경제성장의 최대 동인인 대외무역은 독일을 위시한 서구라과 제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은 총 US\$ 620억을 상회하여 전년 동기대비 20.1%나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약 US\$ 578억을 기록하여 20.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외국자본의 생산투자에 따른 유럽의 생산기지로서의 확고한 위치로 원부자재의 수입, 완제품 생산 및 수출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체코 경제의 특성으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서부유럽 시장에의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체코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지출증가를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회복세를 보이지 않던 체코내 소매시장 매출 증가율이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경기 활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코의 소매시장 매출 증가율은 2010년 5월 전년동기 대비 3.1%의 증가율을 보인 이후, 6월에는 예상치 보다 2 배 이상 높은 6.6%나 증가하였으며, 7월에도 2.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으로 내수시장의 소비수요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일반 시민들의 미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aiffeisenbank 수석 경제분석가인 Mr.Martlik은 경기침체 후 회복의 기운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부문이 소매시장으로 체코 소비자들이 드디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밝게 해주는 확실한 신호라고 언급하면서,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0%에 달하는 높은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하였다.

높은 실업률을 낮추어 소비자들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소비지출은 다시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하반기에 불확실한 국제 경기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감소하면 성장세를 유지시켜줄 동인이 사라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0년 7월에 공식 출범한 Necas 내각은 선거공약으로 내건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공무원 급여 10% 삭감, 정부부처 축소, 불요불급한 정부지출 억제 등 공공부문의 지출을 축소하는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설부문에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도로 및 철로 공사

등 공공토목 공사가 최대 60%까지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반기에 12.2%의 매출감소를 기록한 건축경기의 회복국면은 2011년 상반기, 대다수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와 같이 5.7% 하락하였다.

체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동기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2년 2월 기준, 2.2%로 전년 평균 물가 상승률인 1.9%를 훨씬 웃돌고 있다.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가 10%에서 14%로 인상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자료: 체코통계청, EIU, IMF, OECD 자료 종합, 2012년 3월 기준)

□ 체코의 주요 산업동향

가. 개관

체코의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외국 자본의 제조업 분야 투자진출이 지속되면서 서유럽 시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어,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되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GDP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건설업, 에너지 산업 등이 주요 산업으로 2008년도 4/4분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09년에는 전체 산업생산이 전년대비 13.4%나 감소 하였으며, 총 매출규모도 15.1%나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부진과 내수 경기예의 영향이 큰 건설업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2010년도에 들어서서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의 10.97.5% 증가에 이어, 2/4분기에도 12.3%의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국제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독일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체코의 산업경기 회복도 다소 지연되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 의료기기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성장은 외국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주요인이나 2007년 하반기부터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자국기업들의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주요 산업별 GDP 비중(%)

	2007	2008	2009	2010
농림어업	2.8	2.3	2.1	1.9
광업	1.3	1.4	1.1	0.9
제조업	27.5	25.6	20.8	18.7
전기, 가스, 수도	3.2	4.2	5.0	5.8
건설업	6.4	6.3	6.5	6.5
도소매업	13.1	13.6	10.6	12.4
호텔, 요식업	1.9	1.8	1.8	1.6
운송, 통신업	10.1	10.0	9.4	9.1
금융업	3.7	3.8	3.6	3.5
부동산업	13.7	13.9	13.0	12.2
기타 서비스업	16.3	16.9	26.1	27.4

※ 자료 : 체코 통계청(2011.1월 자료)

나. 주요 산업 동향

1) 광업

체코는 매우 다양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석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량에 그치고 있고 경제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광물 광산은 폐쇄된 상태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은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며 북부 모라비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탄광들은 1995년까지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탄광들은 모두 폐광 되었으며, 대규모 탄광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1990년에 186,111명에 달했던 근로자 수가 2009년 4/4분기에는 3만 8천명까지 축소되었다. 국영 석탄 업체들의 영업 실적은 가스 생산으로의 사업 다각화와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석탄 생산의 80% 이상이 갈탄이다.

2009년도 체코의 석탄 생산량은 무연탄이 1,1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였으며, 갈탄이 4,516만 톤으로 4.3%가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대 생산 기업인 Sokolovska 사가 2036년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코의 원유 및 가스 생산은 남부 모라비아의 Hodonin 지역과 카르파티아 산맥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은 원유가 약 23만톤, 천연가스가 1,300만 m³ 수준으로 전체 수요량의 4-5%를 공급하는데 그치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우라늄 채굴 확대를 계속해서 언급해 왔으며, 정부는 2012년 말까지 새로운 자원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인지, Dukovany와 Temelin 지역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가 추가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게 될 경우에는 2014년까지 Rozna 광산의 우라늄을 채굴할 것이고, 북서쪽 지역의 새로운 광산을 탐사할 것이다. 또한 2015년까지 우라늄의 가격은 현재의 20%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12.3월 자료)

2) 에너지 산업

체코의 주요 국내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전체 기초 에너지 공급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석탄 채굴량을 기준으로 체코의 무연탄 매장량은 수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탄의 경우 향후 25년 정도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이 4,500만 톤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 말기 동안 체코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석유, 원자력 및 천연

가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소련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1995년 독일의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Ingolstadt로부터의 파이프 라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체코에 대한 유일한 석유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97년 5월 노르웨이와의 계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체코 천연가스 수요량의 20% 이상을 노르웨이로부터 공급 받기로 하면서 에너지원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은 종전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다.

2008년 기준 체코의 전력 생산량은 83,518GWh로 이중 화력 발전이 61.3%, 원자력 발전이 31.8%로 대부분이며, 기타 가스발전 3.7%, 수력 발전 2.8% 등이며, 풍력 및 태양열 등 등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은 0.3%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체코 정부는 전통적인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와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환경 문제 때문에 중·동구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야심 찬 원자력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체코 전력시장의 73%를 담당하고 있는 국영 전력회사인 CEZ(체코 정부지분 69%)는 전체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7위에 랭크 되어 있는 중동부 유럽의 최대 에너지 그룹으로, 최근의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붐을 타고 체코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 원전건설에도 참여함으로써 향후 20년간 유럽지역에서 원전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CEZ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Temelin 원전 3,4기 건설은 입찰참가 기업인 Toshiba 계열의 Westinghouse, 러시아의 Atomstroyexport 및 체코의 Skoda JS 합작사, 프랑스의 Areva 등 3개 그룹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2012년 말에 최종 건설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가스산업 민영화는 체코 가스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국영 가스 회사인 Transgas가 2001년에 독일의 RWE사에 매각되어 RWE Transgas가 됨으로써 완료되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대기업들은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2006년 말에는 천연가스 시장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또한 2004년 EU 가입으로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13%까지 친환경적 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동 부문의 경제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활발 하게 추진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체코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붐으로 2009년 말 기준으로 체코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만도 총 464MW를 넘어섰으며, 이는 2008년 말의 39.5MW 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체 전력생산 용량 18,326MW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체코 에너지 관리청에 따르면 발전설비 수(전력망에 연결된 개수)도 2007년 말 249개에서 2008년 말에는 1,214개로, 2009년 말에는 6,013개로 전년대비 약 5배나 증가하여 솔라 에너지부문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2010년에도 솔라에너지 부문의 빠른 성장세는 지속되었다. 이에 2011년 부터 정부는 26% 세율의 태양광세를 도입하며 태양광 산업 규제에 나섰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으며,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 소송도 이어졌다. (자료: 체코 통계청 및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12년 3월)

3) 자동차 산업

체코의 제조업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산업분야인 자동차 산업은 2009년에 총 97만 여대를 생산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최대 기업인 Skoda 사는 전년대비 8만 여대가 감소한 53만대 생산에 그쳤지만, 소형차에 특화된 TPCA 사가 8천대 이상 증가한 33만대를 생산하였으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현대자동차가 약 12만대를 생산하였다.

이는 자동차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중소형 차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2010년도 총 생산이 전년대비 9.52% 증가한 107만대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기가 회복되었다.

체코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2011년 기준 120만대이며, 이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것이다. 주로 독일로 수출을 많이 한 것이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 2012년 에는 5.4%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EU 시장 내에서의 수요 감소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체코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Skoda와 현대차의 생산 증가 계획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유럽에서의 생산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의 자동차 생산이 2012-2016년 사이 평균 6%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6년 말에는 160만대의 차량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형차 시장에서 Skoda 사의 Fabia 모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Ford의 Fusion, Fiesta, Peugeot 의 207 모델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 부문 에서는 기아의 Cee'd 가 최고 인기모델이며, Renault 사의 Megane 와 현대의 i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소형 다목적 차량(MPV)으로는 Skoda의 Roomster, Citroen 사의 Berlingo, Dacia 사의 Logan 모델이, SUV 부문에서는 VW 사의 Tiguan, Honda 의 CR-V, Nissan 의 Qashqai 등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모델들이다.

(자료 : 체코 자동차산업협회, BMI,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12년 3월 최신 자료)

4)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체코의 여타 ICT 분야의 2009년도 부문별 시장규모를 보면 IT 서비스 부문이 약 12억 유로로 가장 크고 년 평균 성장률도 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드웨어 부문인 네트워크 장비 및 소비자용 통신기기 시장이 각각 약 4억 유로 규모로 전년대비 2.5% 내외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ICT 시장의 주 성장동력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진출에 힘입은 바 크지만, 개방화 이후 전통적인 산업국가의 기반 위에서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센터 건립 등 민간부문과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자국 산업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국 글로벌 기업들의 중동부 유럽시장을 겨냥한 IT 서비스 센터 및 현지 전문 인력을 활용한 R&D 센터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체코는 명실상부한

중동부 유럽의 IT 산업 선두 주자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2009년도 체코 투자청(CzechInvest)이 지원한 총 186건의 산업투자 중 약 30%가 소프트웨어 개발분야로 최다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브르노를 중심으로 한 남부 모라비아 지역이, IT 서비스 분야는 수도인 프라하 및 인근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체코의 GDP대비 IT분야 지출 비율은 서유럽 국가 못지 않다. 2012년 체코 IT 시장의 규모는 49억달러로 예상되고 2016년에는 62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체코에 등록된 ICT 분야 특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주요 국별 ICT 특허등록 현황을 보면 독일이 330건으로 최다 등록국이며, 그 다음이 144건의 체코, 128건의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타 유럽국가로는 79건의 네덜란드, 78건의 스위스 및 58건의 프랑스 등이 주요 진출국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57건으로 7위, 한국이 21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11위를 기록하였다.

체코의 ICT 시장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2007	2008	2009	06-07	07-08	08-09
Software	518	569	618	10.5	9.7	8.6
IT Service	956	1,068	1,186	10.9	11.8	11.0
Telecom end-user equipment	351	363	373	4.7	3.5	2.5
Network equipment	379	388	398	8.6	2.5	2.6

자료 : EITO Country Report

중동부 유럽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전문인력.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체코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체코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2년 11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한자리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연평균 6%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16년에는 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소프트웨어 시장의 수요추세는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 Open Source Software(OSS), Control & Applications Integration, Virtualization, Cloud Computing 및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등이 대세이다. 지금까지는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BI(Business Intelligence), LMS 등 기업용 관리 시스템 및 보안관련 분야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종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보다 고품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의료분야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Real-Time Outbreak & Disease Surveillance (RODS)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 체코에 소프트웨어 R&D 센터를 개설한 글로벌 기업으로는 Microsoft 사의 휴대전화 기술 개발센터, Skype 사의 응용기술 개발센터, Deutsche Boerse 및 Redhat 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Sun Microsystems, Monster Technologies, Acision 및 Infosys 사 등이 기존 R&D 센터의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용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Virtual Battlespace 사와 폭발물 방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Bohemia Interactive 사 등이 2009년도에 개발센터를 프라하 인근지역에 개설하였으며, IMB, Siemens 등 유명 기업들도 체코에서의 사업기반을 매년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코 기업들은 특정분야에 특화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Antivirus 분야의 AVG Technologies 사, 보안 솔루션 분야의 Keiro사 및 프린트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개발한 Y Soft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의료부문 소프트웨어 분야의 SAPRO 사와 안전 및 위기 관리 프로그램에 특화한 T-SOFT 사 등은 동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자료: 체코 투자청, BMI,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12.3월)

5) 의료기기 산업

체코 의료기기 공급업자 조합(CzechMed) 회장인 Mr.Miroslav Palat 에 따르면 체코의 2009년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체 의료시장의 7%인 CZK185억(약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중 일반 치료용 기기시장이 CZK135억, 구급 치료용이 약 CZK50억 이었다.

체코의 의료기기 시장은 개방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병원의 대부분이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의 설립이 확산되고 있고, 공공병원의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1/4분기 기준으로 체코 의료기기 생산자협회(Medtechnik)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은 64개사로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기술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체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 정부도 자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R&D 분야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체코 투자청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X-Ray 기기, 긴급구조 장비 및 병실침대 등의 전통적 강세분야에 더해, 최근에는 나노 기술 및 IT 를 접목한 최첨단 진단 및 치료기기의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체코의 의료기기 기업으로는 1990에 설립된 병원용 일반침대 및 특수침대 전문기업으로 체코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Linet 사를 꼽을 수 있으며, 동사는 종업원 460여명에 연간 매출은 약 7천만 유로수준으로, 생산품의 86%를 세계 7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생물학적 보호장비, 긴급 구조장비 및 이동식 작업장 등을 생산하는 EGO Zlin 사는 1992년에 설립되었지만 감염자 격리보호 장비 및 자연조건이 열악한 위험지에서 사용 가능한 구조장비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현재 군 장비 부문과 민간 구조활동 부문을 중심으로 20여 개 국가에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하였다.

방사선 치료기기 부문에서는 1966년에 설립된 핵연료 연구기관의 Know-how를

전송/발전시킨 UJP Praha 사가 대표적인데, 동사는 디지털화된 다양한 방사선 치료시스템을 생산하여 주로 중앙 아시아 지역 국가(구 소련연방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과 및 치과용 기자재 분야에서 유럽시장에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Medin 사와 독일 MMM 그룹에 편입되었지만 멸균 소독기기 및 실험기자재 전문기업으로 60년 이상의 수출경험을 가지고 있는 BMT 사 등이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체코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체코 및 유럽의 의료기기 시장을 목표로 해외 기업들의 진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심장병 및 X-Ray 부문의 미국계 Arrow Int'l 사, 제약 및 바이오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격리수송 시스템 분야의 영국계 Laminar Medica 사, 외상치료 및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오스트리아의 Lohmann & Rauscher 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독일의 Otto Bock사가 보정 및 재활 장비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Molnlycke Health Care사는 외과용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시장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는 현재 공공병원의 경우 CZK2백만(약 11만 달러)을 초과하는 물품구매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입찰관련 서류 및 진행이 체코어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지 사업기반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현지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나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할 경우 국내외 기업간의 공식적인 차별은 없다.

입찰구매 의무수행 단가가 너무 낮아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철저한 구매자 위주의 맞춤형 스펙제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체코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료: Czechmed, Medtechnik, 체코 통계청 자료 등 종합, 2012.3)

부록 2 주요 수출입 동향

가.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28,998	10.5	32,107	14.3	-3,109
2001	33,358	15.0	36,453	13.5	-3,095
2002	38,504	15.4	40,735	11.7	-2,231
2003	48,709	26.5	51,239	25.8	-2,530
2004	67,194	37.9	68,245	33.2	-1,051
2005	77,985	16.1	76,340	11.9	1,645
2006	95,143	22.0	93,430	22.4	1,713
2007	122,405	28.7	118,255	26.6	4,150
2008	145,921	19.2	141,593	19.7	4,328
2009	112,772	-22.7	104,721	-26.0	8,051
2010	132,138	17.2	125,628	20.0	6,510
2011	162,184	22.7	151,404	20.5	10,780

자료: 체코 통계청(2012년 3월 자료)

나. 수출입 동향

체코의 수출입은 2000년도 이후 두 자리 수의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2004년 5월 1일 EU 가입 이후에는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2005년도 부터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한 결과, 유럽의 생산기지로써의 역할이 정착되면서 국민경제의 8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 수출시장인 서구라파 시장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서구라파 시장의 경기 침체가 심화된 2009년에는 해외의 수출수요와 국내의 수입수요가 모두 감소세를 보여,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은 22.7%가 감소한 US\$1,128억, 수입은 26.0%가 감소한 US\$1,047 억을 기록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약 US\$81억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최대 수출국은 독일,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주변국이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중국, 폴란드 등으로 대외교역의 유럽지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체코의 대외교역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2011년에는 대외수출 162,138백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무역 흑자 역시 10,780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대외무역의 증가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EU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독일경제가 조금씩 살아남에 따라 체코 경제도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코 교역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는데, EU 국가에 대한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각각 85%와 65%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입은 각각 4%와 18%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어, 교역지역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체코 정부는 금융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의 부보 지역 및 부보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다.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기계류, 자동차, 전기. 전자, 기초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섬유류, 가구류, 유리 및 유리제품

○ 수입

- 기계류,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원유 및 가스, 섬유류, 식품류

부록 3 자유무역협정 현황

가. CEI(Central European Initiative)

1989년 11월 공산 정권 붕괴 이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유고의 4개국 주도 하에 역내 분쟁 해결 및 중부 유럽 내 분열 방지를 위한 지역 협력체인 중부 유럽 4개국 회의(Quadrilateral Cooperation)로 창설되었으며, 1992년 7월 빈 정상회의에서 명칭을 “Central European Initiative”로 변경하고 회원국이 10개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으로 확대되었다.

현재의 회원국은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포함하여 17개국이다.

CEI는 회원국 간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14개 분야별 Working Group 운영과 연 1회 총리 회의, 연 2회 외무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나. EU(European Union)

체코는 2004년 5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른 10개국과 함께 EU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유로화 도입을 통한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가입은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적자의 급속한 증가와 2010년 4월에 발생한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로 일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확산되면서 향후 추진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난 5월말 총선결과 집권한 Necas 수상의 우파연합정부는 집권기간 중에 유로화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체코의 유로화 도입은 당분간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 쉐젠 조약(Schengen Boarder Code)

체코는 2008년 1월 1일부터 EU의 쉐젠 조약에 가입하여 회원국 간의 국경

에서의 출입국 심사를 폐지하였다.

기존 회원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5개국) 신규 가입국(2008년 1월 1일) :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9개국)

라. EU의 지역무역협정(FTA) 추진 정책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 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 한다.

〈EU의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 협정, 무역 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룰 모델은 없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부록 4 다국적 대기업 적용 보조금 프로그램 리스트

이하는, 다국적 대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 리스트이다. 그러나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또한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 환경, 교육 등.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운영프로그램 기업과 혁신
 - 운영프로그램 기업과 혁신 하에서 재정지원이 제조부문과 관련 서비스의 사업프로젝트에 이용 가능하다. 프라하를 제외한 체코공화국에서 시행된 프로젝트가 자격이 있다.
 - 2007-2013년 사이 산업무역부는 연구개발R&D (TIP)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보조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가. 정보통신기술과 전략서비스

- 새로운 IS/ICT 솔루션의 창조 및 적용, 공용서비스 수선센터의 설립과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최소투자금액은 소/중/대기업 각각 CZK 0.5/1/3 백만이다.
- 창출될 수 있는 최소 신규고용인원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소/중/대기업 각각 10/20/40이다.
- 최대보조금액은 CZK 100백만 (특정지역의 경우 CZK 150)백만이다.
- 정부보조금 수준은 적격비용의 30 - 40 퍼센트이다. 95
- 적격비용은 고정자산비용 또는 종업원 총 급여와 토지 및 건물 리스료로 정의된다.
- 최소 5년간 투자금액과 고용유지 의무.

나. POTENTIAL

- 즉시 생산에 이용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센터의 설립과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최소 투자금액(대기업)은 CZK 10 백만이다.
- 최대보조금은 CZK 100 백만(특정 지역의 경우 CZK 200 백만)이다.
- 적격비용의 30 - 40 퍼센트가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 유형자산(건물, 토지와 기계장치)과 무형자산(라이선스와 노하우 취득) 비용이 자격이 있다.
- 최소 투자수준이 프로젝트 완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다. 교육센터 프로그램

- 교육센터 또는 교육실의 건설, 수리, 장비 지원.
- 최대보조금액은 CZK 100 백만이다.
- 정부보조금 수준은 적격비용의 30 - 40 퍼센트이다.
- 교육센터와 관련된 고정자산비용이 자격이 있다.
- 교육센터는 자격이 있는 산업 또는 서비스부문을 운영하는 종업원 교육에 50% 이상 이용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 완료 후 3년 동안 교육센터의 최소 30% 이용조건.

라. 부동산 프로그램

- 제조부문(CZ-NACE 10-33), 전략 서비스 및 기술센터의 산업지대의 설립과 건물의 수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최대 보조금액은
 - 재건축 프로젝트: CZK 500 백만,
 - 프로젝트 문서화 준비: CZK 50 백만.

- 정부보조금 수준은 적격비용의 30 - 40%이다.
- 해당적격비용은 프로젝트 문서화(별개의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 건물 매입가격, 부지 준비, 건축 및 재건축 비용, 미사용 건물의 해체, 유틸리티 및 도로 등을 포함한다.

마.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

- 동 프로그램은 전력의 생산, 이전 및 소비(에너지 절약)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업의 대규모 활동을 지원한다.
 - 자가사용을 위한 기존 에너지 생산시설의 현대화
 - 에너지의 측정 및 제어와 관련 시스템의 소개 및 현대화
 - 전력 및 난방공급망의 현대화, 혁신 및 에너지손실의 감소
 - 주거용 건물 외의 건물의 온도 측정 기술의 향상
 - 산업용 폐에너지의 사용
 - 전력 및 열 병합발전을 통한 열효율의 향상
 - 생산 및 기술 프로세스상의 에너지 집적도 감소 및 효율 향상
- 최대보조금액은 CZK250백만이다.
- 최대보조금액은 적격비용의 30-40%이다.
- 적격비용은 유형고정자산(기계 및 설비, 건물의 기술적 개량)과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부록 5 조세협약(한국-체코)

1992년 4월 27일 서울에서 서명

1995년 3월 3일 발효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조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노동임금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 (1) 이윤에 대한 조세
 - (2) 임금세
 - (3) 문학 및 예술활동소득에 대한 조세
 - (4) 농업세
 - (5)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6) 주택세

(이하 “체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 나. “체코공화국”이라 함은 체코공화국의 세법이 효력을 가지는 영역을 말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체코공화국을 말한다.
 -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조합 및 단체
 -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보트 또는

-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보트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 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 (2) 체코공화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 점
 - 다. 사 무 소
 - 라. 공 장
 - 마. 작 업 장
 -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설치공사는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광고·정보의 공급, 과학적인 연구 또는 유사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바. 세항 가 내지 마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및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설비,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자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

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 이조에 포함된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 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인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해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한국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자본금이 한국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나.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1) 체코 국립은행

(2) 자본금이 체코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동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 나.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왔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채약국에 그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채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관련된 어느 12월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채약국안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 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제18조 【연 금】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

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하여 동 일방체약국·그 하부조직·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과 대한무역진흥공사, 그리고 체코공화국의 경우 체코 국립은행과 체코 상업센타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 【학 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관련된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며, 현재 또는 방문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경우 용역활동이 교육 또는 견습과 관련이 있고 보수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한 동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연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연구기관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⁸⁹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체크공화국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체크공화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체크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체크공화국안의 원천으로부터의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체크공화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체크공화국은 그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과시 과세표준에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으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로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공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체크의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동 체약국에서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 계획과 관련하여 경감되거나 면세하였을지라도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할 수 없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의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이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보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를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채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채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가. 일방 또는 타방채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나.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프라하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가.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29조 【종 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4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 명/

체코공화국을 위하여
/서 명/

※ 적용 대상 조세

- 대상조세(제2조)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거주자(제4조)
 - 체코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개인, 법인, 기타 단체)
 - * 그 국가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제외
- 부동산소득(제6조)
 - 국내 소재 부동산소득은 과세
- 사업이윤(제7조)
 - 국내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대해 과세
- 해운 및 항공운수(제8조)
 - 체코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운항소득은 면세
- 배당(제10조)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국내 거주자(법인)인 경우 과세
 - 단, 배당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5%

- 그 밖의 경우 배당총액의 10%
- 이자(제11조)
 -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 단, 이자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 이자총액의 10%
 - * 이자수취인이 체코 정부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정부, 체코 국립은행, 정부간 합의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 * 위 정부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보증된 채권 관련 이자 면세
 -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신용판매 이자, 상품의 신용판매 이자 면세
- 사용료(제12조)
 -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 단, 사용료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 사용료총액의 10%
 - * 문학작품·예술작품,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필름·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 포함
- 양도소득(제13조)
 - 국내 소재 부동산양도소득은 과세
 - 국내 고정사업장 및 사업용 동산 양도소득 과세
 -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와 그 선박·항공기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양도소득은 면세
 - 위 이외의 재산 양도소득은 면세
-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제14조)
 -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 * 거주자(개인, 법인, 기타 단체) 적용
- 종속적 인적용역(제15조)

- 고용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
 - 보수 수취인이 어느 12월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
 - 보수가 국내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
 - 보수가 국내에 그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 * 체코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에 관한 보수는 면세
- 이사의 보수(제16조)
 - 국내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는 과세
- 예능인 및 체육인(제17조)
 -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 소득은 과세
 - 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 * 정부간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면세
- 연금(제18조)
 -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체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유사보수는 면세
- 정부용역(제19조)
 - 체코 정부에게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수는 국내에서만 과세
 - 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
 -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 체코 정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개인이 국내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 연금은 국내에서만 과세
 - * 체코 국립은행, 체코 상업센터에 대해서도 동 조항 적용
- 학생(제20조)



-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발생한 지급금은 면세
 - * 체코 대학에 있는 학생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 이하의 기간동안 국내 체재하며 받는 생계, 교육 관련 용역보수 면세
- 교수 및 연구가(제21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강의 또는 연구 보수에 대해 면세
 - 국내 방문직전에 체코 거주자
 - 국내 대학·연구기관·승인된 유사기관이 초청
 - 동 초청기관에서 강의·연구 목적만으로 방문
 -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문
- 그 밖의 소득(제22조)
 - 위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소득은 면세

발효일자 : 1995. 03. 03.

적용시기 : 1995. 03. 03. 이후 지급분

부록 6 회계와 감사

가. 회계상 필요조건

지난 몇 년간 체코회계기준의 변화는 비록 여전히 중요한 몇몇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체코회계가 더욱 IFRS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회계법은 주요한 틀로써 적용되고 세부 가이드는 복식부기회계법령(Decrees on Double-Entry Accounting)과 체코회계기준에서 정한다. 다양한 법령(Decrees)과 체코회계기준은 다양한 유형의 회계실체들, 예를 들면 일반기업,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을 위한 규칙과 기준을 명시한다.

회계 법규들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모든 회계기록은 체코어로 되어야 한다.
- 모든 회계기록은 체코 크라운화(CZK)로 표시 되어야 한다.
- 표준규칙과 회계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 계정과목의 일반구조는 표준계정과목에 일치하여야 하며, 특정 세부내용들은 개별회사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복식부기 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연간 매출액이 25백만 CZK을 초과하지 않는 회계실체는 단순화된 회계기록을 유지해도 된다. (“조세증빙 체계(Tax evidence system”)).
- 회계목적의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기초하여 개별 회계실체에 의해 결정된다.
-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물리적 수량 확인은 매년 필요하다.
- 법정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최소한 성격별로 분류된)와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또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를 포함해도 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배치와 표제는 법령(Decree)의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 개별적인 연간보고서가 법정감사의무가 있는 회계실체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이 있는 모든 회계실체는 EU에 의해 채택된 IFRS에 따른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회사들을 지배하는 회계실체는 회계법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회사들과 중대한 영향력을 받는(의결권 20% 이상) 회계실체는 연결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아래 기준 중 최소한 두 가지를 충족하는 연결그룹에 적용된다.
 1. 연결매출(내부거래 제거 전)이 700백만 CZK을 초과
 2. 모회사와 자회사의 연결자산(내부거래 제거 전)이 350백만 CZK을 초과
 3. 회계기간 동안 종업원 평균수가 250명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의 면제대상에서 은행, 보험회사, 재보험회사와 상장주식 또는 채권 발행회사는 제외된다.

연결회사가 체코법이나 다른 EU국가법에 의해 규제 받는 다른 연결 회사의 하위연결회사이며, 관련법령에 서술되어 있는 특별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동 연결회사는 연결의무가 없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 이외의 회계연도 종료 일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회계원칙과 정책

계속기업가정, 중요성원칙, 보수주의의 원칙, 수익비용대응, 회계원칙의 일관성이 체코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준수되어야 한다. “True and fair view” 개념이 완전히 도입되었으나 반면, 공정가치 회계개념은 몇몇 특정영역과 IFRS와 동일한 범위에 한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빈번히 법적 형식이 실질보다 우선한다.

○ 체코의 일반 회계정책

-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으로 계상되고 추정내용연수 동안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된다. Component accounting(자산부문의 별도 상각) 이 허용되며, 강제사항은 아니다.
- 투자자산 평가방법은 상각후원가법 또는 공정가액법이 선택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 공정가 액은 시장가격으로 정의된다. 만약 시장가격이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지분법(순자산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재고자산은 표준원가법, 평균법, 선입선출법(FIFO)으로 평가되어 계상된다. 후입선출법(LIFO)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영업권(무형자산) 또는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조정액(유형자산)은 매수시와 사업재조직 시 발생한다. 분류는 거래의 정확한 성격에 기초한다. 영업권은 매수일로부터 60개월 동안,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조정액은 180개월 동안 상각한다.
-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로부터 발생한 실현 환차손익 및 미실현 환산 손익은 모두 손익계산서상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와는 달리 체코회계법상 금융리스의 개념이 없다(리스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리스제공자의 고정자산으로 간주되며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리스는 운용리스와 유사하게 회계처리 된다.

이연법인세는 재무보고목적에 위한 자산부채의 금액과 세무목적의 금액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 되어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 차이를 발생 가능한 미래 과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인식된다.

다. 감사 조건

감사는 다음의 경우 강제적이다.

- 모든 은행과 뮤추얼펀드
- 재단 및 특정비영리조직

-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직전 및 당해 양 회계기간 모두 충족한 주식회사
 1. 순매출액이 연간 80백만 CZK을 초과하는 경우
 2. 총자산이 40백만 CZK을 초과하는 경우
 3. 평균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회계실체(유한회사 포함)는 위 기준 중 적어도 2개를 충족하면 감사 대상임

감사인법은 감사인의 공인 및 감사기준 확립에 책임이 있는 감사인회의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

감사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에 의해 제정된 국제감사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과 체코감사 인회의 관련 가이드스(aplika.ni dolo.ky)에 따라 수행된다.

EU 8th Directive의 규정들을 이행하는 새로운 감사인법이 2009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회사들을 위한 주요변경사항은 이제 감사인 임명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임명되어야 하며, 감독기구가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공익기업이 정의된다. 공익기업과 그 감사인의 새로운 책임이 법에 규정되었으며,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선임파트너 순환교체, 투명성 보고서 등이다.

현재 체코 내 약 1,650 여명의 등록된 감사인이 있다.

부록 7 관세 및 수입규제 제도

□ 체코의 관세 제도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체코는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2004년 5월 1일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 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 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벨기에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5)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체코의 수입규제 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 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 지고 있다.

1)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 (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 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참고)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1년 9월 5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 PET칩 - 철강제 관연결구류 * 철강 로프와 케이블과 실리콘(우회덤핑)

자료: 체코 산업무역부 (<http://www.mpo.cz/cz/prehled-ad-as.html>)

부록 8 주요 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0년 5월말 기준 26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 세제, 비누 /샴푸 /헤어컨디셔너),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r covering), 가구(목재 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 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서비스 (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 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 세척기 등 (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라벨링 지침 (Council directive/92/75/ EEC, 1992)
<p>- GE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품목)
<p>- Energy 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 와 동일 기준을 적용 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 (15품목) ○ 시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부록 9 지적 재산권

가. 개요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체코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가 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다. 상표권

체코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포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 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 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 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 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부록10 노무관리

가. 노동 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좀 더 쉬운 편이다.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규정은 사회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과 관계 없이 팀 인원 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공장 인근지가 아닌 곳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는데, 체코의 노동법은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대폭 개정된 “신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 경비, 노동 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 금지 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 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임금

임금 수준은 2010년도 월평균 임금이 CZK 23,951으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명목 임금 인상률이 2006년 6.5%, 2007년 7.3%, 2008년 8.5% 등 매년 6~8%의 인상률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2009년도에는 4.0%에 그쳤으며, 2010년에는 가장 낮은 2.0%의 인상률을 보였다.

법정 월 최저 임금은 처음에 1991년 2월에 제정되었고, 그때부터 15번 변경됐다. 마지막 변경은 2007년 1월 이후로, 1년에 월 CZK 8,000, 시간당 CZK 48.10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커 구속력은 없으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 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 현금으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임금

(단위: CZK,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월 평균 명목 임금	20,211	21,692	23,542	23,598	23,951	24,318
명목 임금 인상률	6.5	7.3	8.5	4.0	2.0	2.2
실질 임금 인상률	3.9	4.4	2.1	3.0	0.5	0.3

자료: 체코 통계청(2012년 3월 자료)

다. 고용 계약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 계약서에는 직무의 성격과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 회사 취업 금지 조항(퇴직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수습 기간(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근무 시간, 담당 업무 등이며 계약 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종업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어도 종업원의 4%는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체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분기 및 3분기 월평균 임금의 1.5배를 부족한 종업원 수만큼 노동 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직원 채용 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조치는 금지되며, 외국인의 고용은 고용주가 지역별 노동 사무소에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고용 허가 기간은 통상 1년으로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라. 법정 근로 시간 및 시간 외 근무 수당

체코의 법정 근로 시간은 종전의 주당 42.5시간에서 2001년 1월 1일부로 주당 5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30시간, 일당 6시간이다.

근로 시간은 매일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최소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 연속 근로 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가 끝난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12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시간 외 근무 한도는 주당 8시간 및 연간 41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간 외 근무 한도는 연간

15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광산이나 물리적으로 부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의 야간 근무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최소 125%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만큼 근무일수에 휴가를 주거나 시간당 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10%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휴가

1) 연차휴가

최소 60일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 휴가(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상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평균 임금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출산 및 육아 휴가

출산 휴가는 28주(쌍둥이는 37주)이며, 산모가 원하는 경우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도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가가 가능하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 휴가 후 고용주는 근로자를 재고용해야만 한다.

3) 병가

신노동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처음 21일 중 3일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나머지 18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60%를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21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질병보험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4.5배를 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미망인에게 CZK 15,000, 자녀 1인당 CZK 25,000, 부모에게 CZK 15,000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바. 해고

노동법상 고용 계약은 합의에 의한 경우, 해고 통보, 즉시 해고, 수습 기간 중의 해고, 고용 계약의 만료 또는 피고용인의 사망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코 내 거주 허가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경우에도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계약의 해지는 관할 노동 사무소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고용 계약 만료

고용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종료일에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1부를 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이 요구하는 경우 동 합의서에 계약 해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고 통지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최소 2달 전(구조조정에 따른 정리 해고의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 통지 최소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협의회 (Work Council)와 관할 노동 사무소에 사유와 해고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용인은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 회사 청산 및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생산제품, 기술, 생산성 향상 또는 조직 개편에 따라 잉여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 피고용인이 주어진 업무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장기적인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 재배치에 피고용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3) 즉시 해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용인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거나, 근로 규칙을 빈번히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경우 서면으로 즉시 해고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즉시 해고 사유를 인지한 지 1개월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하며, 즉시 해고 사유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와 육아 휴가 중인 남녀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용인은 건강진단 결과 더 이상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한 후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다른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사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인은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금으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 노조

체코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자의 조합 가입은 자유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 약 10%로 1989년의 92%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영역은 단체 협상(고용자 및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상호간 관계 설정)과 통제, 노동법상의 피고용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보호, 피고용자 사회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토론 참가 등인데 노동조합은 조합과 경영자 간의 상호 협정을 제외한 업무 협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조합은 회사의 경영 상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노동자들이 감사위원회의 3인 중 1명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그밖에 경영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입에 관한 법적 요구 조건은 없다.

현재 체코 노동조합 연맹(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에는 총 32개의 산업별 조합과 약 46만 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다. 체코 노동조합 연맹 예측에 따르면 체코 labor force 중에 약 27%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연도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명)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조합원 수	1,025,800	610,000	539,000	511,488	497,000	460,000

자료: 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2010.5월)

아. 사회보장 제도

체코 내에서 일하는 모든 체코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체코의 사회보장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회보장 제도는 연금보험, 실업보험, 질병보험의 사회 보장성 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및 종업원이 법률로 정해진 요금률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사회 보장 세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세율

체코의 사회보장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금, 질병, 실업의 3대 사회보장세 31.5%와 의료보험 13.5%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의 34.0%,

종업원이 11.0%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2008년부터는 사회 보장세 적용대상 소득이 체코 월평균 임금의 48배까지로 한도(Cap)가 설정되어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도 동 금액까지만 사회보장세가 적용된다.

구분	고용주(%)	종업원(%)	계(%)
의료보험	9.0	4.5	13.5
연금보험	21.5	6.5	28.0
질병보험	2.3	0.0	2.3
실업보험	1.2	0.0	1.2
총계	34.0	11.0	45.0

주 : 2012년 적용 세율

2) 사회 보장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고용주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신상에 변화(이름 변경, 결혼, 주거지 변경 등)가 생긴 경우에도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당 CZK 2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보장보험 신고는 각 지역 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CSSZ)에 하며 의료보험은 General Health Insurance Company(VZP)에 한다. 사회보장세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분담 분까지 사전 공제하여 매분기별로 CSSZ 및 VZP의 구좌로 각각 송금하여야 한다.

부록11 진출 형태에 따른 회사 설립절차

가. 법상 구분

1) 개인사업자(physical entity, zivnostenske podnikani)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설립등기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 개시 가능하다.

기업이익금 및 자금의 개인적 사용이 자유로 우나, 기업채무에 대하여 대표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 18세 이상의 개인
- 법적 대응능력
- 법이 규정하는 신의성실
- 전문적 능력 증명서 (법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 세금 및 사회보장비, 정부보조금 지불완료 증명서

2) 법인

가)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ies (a.s. : akciova spolecnost)

최소 발기인의 수	개인 2명 또는 법인 1명
최대 사원(社員)의 수	무제한
최소 등록 자본금	2,000,000 - kc (공개주의 경우, 20,000.000 - kc)
최소 납입 자본금	총합이 2,000,000 - kc (공개주의 경우 20,000,000 - kc)
최대 납입 자본금	무제한
설립시 납입 자본금의 분할 한도 주식	액면가의 30%와 자본잉여금
납입 자본금의 분할 기간	설립 후 최대 1년 내

각 사원의 출자좌수	주식과 관련되어 결정됨
회사채무에 대한 주주 책임여부	책임 없음
활동 영역	사업. 다른 목적으로도 설립가능
회사 기구	○ 주주총회와 대표기관 - 이사회, 감사기구 및 그 외 규정에 따른 부서
설립 서류	공증된 창립총회의사록, 설립계약서, 설립증서(정관)
의무조항과 적립금 한도	규정에 의해 정해진 이익금에서 별도 적립금을 준비하며, 최소 금액은 순이익의 20%이고 최대 금액은 자본금의 10%를 넘지 않아야 함

나)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s.r.o. : společnost s rucenim omezenim)

최소 발기인의 수	개인 1명 또는 법인 1명
최대 사원(社員)의 수	50명
최소 등록 자본금	200,000 - kc(약 8,000 US\$)
최소 납입 자본금	20,000 - kc
최대 납입 자본금	무제한
설립시 납입 자본금의 분할 한도	각자 납입금의 30%로, 총액이 최소 100,000 - kc이어야 함
납입 자본금의 분할 기간	설립 후 최대 5년 이내
각 사원의 출자좌수	1좌당 1,000 - kc (조합규약에 의거, 다르게 정해 질 수도 있음)
부채에 대한 사원의 책임여부	회사등록서류상의 미불된 납입금에 대해서만 모든 사원이 차이 없이 공동으로 책임을 짐
활동 영역	사업. 다른 목적으로도 설립 가능
회사 기구	사원총회와 대표기관- 이사, 감사(의무 조항 아님) 그 외 설립계약서에 따라 추가 가능
설립서류	공증이 된 조합규약이나 설립증서(정관)
의무조항과 적립금 한도	조합규약에 따른 이익금에서 별도적립금을 만들며, 최소 금액은 이익의 10%임

다) 일반조합 general partnerships(v.o.s. : verejna obchodni spolecnost)

- 우리나라의 합명회사와 흡사하나, 사원의 출자 의무가 없음

최소 발기인의 수	개인 2명 또는 법인 2명, 또는 혼합될 수 있으나, 2명이 기본
최대 사원(社員)의 수	무제한
최소 등록 자본금	0
최소 납입 자본금	정해져 있지 않음
최대 납입 자본금	무제한
설립시 납입 자본금의 분할 한도	0
납입 자본금의 분할 기간	0(조합규약에서 정할 수도 있음)
부채에 대한 사원의 책임여부	무한책임
활동 영역	사업
회사 기구	대표기관-사원들(그 외에는 조합규약에서 규정 가능)
설립서류	총사원의 공증서명이 들어간 조합규약(정관)
의무조항과 적립금 한도	법적으로는 별도적립금을 만들지 않으나, 조합규약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라) 유한조합 limited partnerships(k.s. : komanditni spolecnost)

- 우리나라의 합자회사 형태

최소 발기인의 수	2명
최대 사원(社員)의 수	무제한
최소 등록 자본금	5,000 - kc(기록 안함)
최소 납입 자본금	5,000 - kc
최대 납입 자본금	무제한
설립시 납입 자본금의 분할 한도	조합규약에 따라 정함
납입 자본금의 분할 기간	조합규약에 의거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지불함

부채에 대한 사원의 책임여부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조합원은 회사 등록서류상의 미불된 납입금에 대하여 만 책임짐
활동 영역	사업
회사 기구	대표기관- 무한책임사원(들)
설립서류	총사원의 공증서명이 들어간 조합규약 (정관)
의무조항과 예비금	법적으로는 별도적립금을 만들지 않으나, 조합규약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마) 협동조합 co- operatives (druzstvo)

최소 발기인의 수	개인 5명 또는 법인 2명
최대 조합원의 수	무제한
최소 등록 자본금	50,000 - kc
최소 납입 자본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총합은 적어도 50,000 - kc이 되어야 함
최대 납입 자본금	무제한
설립시 납입 자본금의 분할 한도	최소 기본자본금의 절반
납입 자본금의 분할 기간	규정에 따라
부채에 대한 사원의 책임여부	책임 없음
활동 영역	사업 또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 기타 필요 확보
회사 기구	조합회의, 대표기관- 이사회, 감독위원회 (규모가 작은 경우, 조합회의와 이사회)
설립 서류	창립조합회의의사록
의무조항과 예비금	설립초기, 불가분기금이 초기자본금의 절반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 10%의 이익이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된 초기자본금의 최소 10%의 금액을 불가분기금으로 설정한다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 상기 법상 구분에 따른 형태로 외국 기업은 체코 내에서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일반조합, 유한조합,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이다.

2) 지사 Branch Office(Pobočky)

- 외국 기업의 지사는 본사(외국 기업)를 대신하여 회사 설립, 합작 투자, 기존 기업인수 및 판매, 부동산 취득 등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의 내부활동에도 적용된다.
- 지사는 지점과 자회사 두 가지 종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설립절차는 동일하나, 세금 적용에 차이가 있다.

3) 지점 branches without legal personality(Organizacni slozka)

- 법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형태로 구분된다.
- 이와 같은 형태는 외국회사가 새로이 법인설립 없이 체코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지점의 생성과 폐지가 용이하고, 유리한 과세가 적용된다. 그 외 법적 의무조항과 권리는 체코 내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이다.
- 본점(외국법인)에 속하였으나, 지점 자체의 경영과 회계 등은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과세 이후의 이익금은 바로 본점으로 송금 가능하다

4) 자회사 Subsidiaries(dcerina spolecnost)

-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본사의 정기적인 간섭이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구분된다.
- 회사 설립은 본사(외국 기업)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회사가 위치한 곳에 있는 영업허가 절차를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자산은 자회사에 속한다.

다. 투자 주체별

외국인의 투자에 있어, 발기인, 사원 또는 기존 업체의 일원으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은 내국인(체코)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의로 1인 법인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 재산권 보호 역시, 내국인(체코)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1) 단독 투자

- 상기 법상 구분에 따른 형태로 외국 기업은 체코 내에서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회사를 설립,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재산권의 경우는 국내 적용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투자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협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된다.

2) 합작 투자

-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작, 외국인끼리의 합작에 있어, 제한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1) 선호형태 및 사유

- 법인 형태 중 가장 간단한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많이 선호되는 진출 형태이며, 이는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 예로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규모 중 가장 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생산법인의 경우에도 유한책임회사(s.r.o)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2) 외국인에게 어려운 형태

- 모든 사업의 조건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국인에게 특별히 어려운 형태는 없다.

부록12 투자입지 선정 및 투자환경

□ 체코의 투자입지 선정

가. 입지 선정 시 유의 사항

체코 내 공장 설립을 위하여 입지를 선정할 때는 대상 지역의 제반 인프라뿐 아니라 대상 토지의 법적 문제와 동 지역의 인력 확보 용이성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체코는 자유화 과정에서 공산화 이전의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 관계를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회복해 주어 왔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명확한 토지 소유권의 획득이 쉽지 않다.

이는 토지의 현 소유주와 이전 소유주 간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 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체코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투자 희망 지역의 지방 정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체코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직장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공장 설립 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지역의 실업률 및 가용 노동 인력 등 인력 확보 용이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투자 대상 지역의 실업률은 투자 시 인센티브 수혜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 주요 지역별 기초 정보

지역	면적(km ²)	인구(천 명)	노동력(천 명)	실업률(%)	월평균임금(CZK)
체코 전체	78,868	10,507	5,286	7.05	23,564
Praha	496	1,258	681	4.03	30,262
Central Bohemia	11,016	1,268	640	6.89	22,577
South Bohemia	10,057	638	321	6.8	20,827
Plzen	7,561	572	292	6.74	22,448
Karlovy Vary	3,314	307	161	9.68	19,931
Usti	5,335	836	407	12.55	21,160
Liberec	3,163	440	217	9.36	21,157
Hradec Kralove	4,758	554	273	6.80	21,682
Pardubice	4,519	517	258	7.72	20,288
Vysocina	6,925	514	258	8.52	20,621
South Moravia	7,159	1,155	580	9.18	22,197
Olomouc	5,159	641	306	10.45	20,306
Zlin	3,964	590	291	8.95	20,241
Moravia-Silesia	5,535	1,242	606	10.92	21,515

※ 주 : 인구-2010년 9월 기준, 노동력-2010 3Q, 실업률-2011년 9월, 월평균임금-2011 1Q-2Q 평균,

※ 자료 : 체코 통계청(2011년 9월 자료)

다. 산업 단지

체코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산업 공단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체코 내 대부분의 산업 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 및 민간 개발 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입주 대상 특정 산업 분야를 결정하지 않은 일반 산업 단지가 대부분이다.

체코에는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산업 단지가 200여 개 있으며,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산업 단지들은 70% 입주가 완성된 상태이다.

산업 단지는 일반 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 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되어 있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 대상 단지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코 내 산업 단지에 대한 정보는 체코 투자청 홈페이지(www.czechinves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코의 주요 산업 단지

Canter of Industrial and Logistics Lovosice				
소재지	Lovosice (체코 서북부)			
부지 면적	65ha	조성 주체	지자체 85%, 민간 15%	
주요 입주 기업	Tris Czech, Tokai Rika, Aoyama, Koswire(한국) 등			
입주 여건	프라하에서 독일 드레스덴으로 가는 DB 고속도로변에 조성된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며 현재 32ha 정도의 잔여 부지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단지 인근에 European Corridor IV 역 위치		
	공항	프라하 공항에서 80km		
	도로	D8 고속도로 인접		
연락처	DZCL, a.s.			
	주소	Osvoboditelu 3717, 410 02 Lovosice		
	전화	+420 416 571 111	팩스	+420 416 532 487
	홈페이지	www.meulovo.cz	E-mail	meulovo@meulovo.cz
Kadan-Kralovsky vrch Production Zone				
소재지	Kadan(체코 서북부)			
부지면적	8ha	조성 주체	민간	
주요 입주 기업	Oiles Czech Manufacturing s.r.o., Thermal Products Czech Republic, Kyocera Solar Europe s.r.o., DONALDSON Czech Republic s.r.o., Arla Plast AB			
입주 여건	독일 국경 인근에 있으며, 현재 22ha 정도의 잔여 부지에 입주가능. 부지 가격은 s/m당 CZK 230			
교통 여건	철도	1km		
	공항	까를로비바리 공항 37km, 프라하공항 90km		
	도로	고속도로 70km, E442에 인접		
연락처	Spolecnost investicniho rozvoje, a.s.			
	주소	Bozeny Nemcove 1689, 432 01 Kadan		
	전화	+420 475 657 111	팩스	+420 475 200 245
	홈페이지	www.kr-ustecky.cz/	E-mail	urad@kr-ustecky.cz

The Triangle Industriel Zone					
소재지		Zatec(체코 서북부)			
부지 면적		360ha	조성 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 기업		IPS Alphs, Hitachi 등			
입주 여건		군용 공항 부지에 조성된 단지로 독일 국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24ha 정도의 잔여 부지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3km			
	공항	프라하공항에서 60km			
	도로	50km			
연락처		Economic Department, Usti Region			
		주소	Veka Hradebni 3118/48, 400 02 Usti nad Labem		
		전화	+420 475 657 969	팩스	+420 734 763 904
		홈페이지	www.triangle-city.ca	E-mail	kucler.p@kr-ustecky.cz
Otrava-Mosnov Airport Industial Zone					
소재지		Ostrava-Mosnov(체코 동북부)			
부지 면적		200ha	조성 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 기업		Bahr Group, Cromodora Wheels, Plakor(한국) 등			
입주 여건		오스트라바 공항 인근에 조성된 단지로 현재 대형 투자용 90ha와 일반 분양용 80ha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철도와 직접 연결			
	공항	오스트라바 공항 0.1km			
	도로	R48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접, 인근에 D47 고속도로 공사 예정			
연락처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City of Ostrava			
		주소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전화	+420 599 442 055	팩스	+420 599 442 040
		홈페이지	www.dynamicregion.cz	E-mail	dadamik@mmo.cz

Industrial Zone Krnov–Cervary Dvur					
소재지		Krnov(체코 동북부)			
부지 면적		48ha	조성 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 기업		IVG Colbachini, Maso, S.T.I. RAME, ERDRICH, APEX 등			
입주 여건		필란드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잔여부지 17ha 정도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4km			
	공항	오스트라바 공항에서 40km			
	도로	1/57 자동차 전용도로에 인접			
연락처		City of Krnov			
		주소	Hlavni namesti c.1, 794 01 Krnov		
		전화	+420 554 614 612	팩스	+420 554 611 112
		홈페이지	www.krnov.cz	E-mail	infocentrum.krnov@seznam.cz
Industrial Zone of Bystice nad Pemstajnem					
소재지		Bystice nad Pemstajnem(체코 중동부)			
부지 면적		61.5ha	조성 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 기업		-			
입주 여건		전체 부지 중 10ha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0.1km			
	공항	브르노 공항에서 60km			
	도로	D1 고속도로에서 35km			
연락처		The Town of Bystice nad Pemstajnem			
		주소	Masarykovo nam. 57, 593 15 Bystice nad Pemstajnem		
		전화	+420 566 590 311	팩스	+420 566 590 347
		홈페이지	www.bystricenp.cz	E-mail	posta@bystricenp.cz



D1 Industrial Park Jihlava				
소재지		Jihlava(체코 중남부)		
부지 면적		45ha	조성 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 기업		Bosch Diesel, Automotive Lighting, Kronospan 등		
입주 여건		프라하와 브르노를 연결하는 D1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현재 잔여 부지 5.5ha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2km		
	공항	브르노공항 93km		
	도로	D1 고속도로로 3km		
Jihlava Municipal Council				
연락처	주소	Musarykovo nam. 1, 586 01 Jihlava		
	전화	+420 567 167 155 +420 567 167 158	팩스	
	홈페이지	www.jihlava.cz	E-mail	rozvoj.mesta@ jihlava-city.cz
Liberec Sever(Narth) Industrial Zone				
소재지		Liberec(체코 북부)		
부지 면적		75ha	조성 주체	민간
주요 입주 기업		-		
입주 여건		현재 잔여 부지 1ha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2km		
	공항	프라하 공항 120km		
	도로	D11 고속도로로 20km		
Investorsko Inzenyrska, a.s.				
연락처	주소	Gork돼 658/15, 460 01 Liberec		
	전화	+420 485 253 333	팩스	+420 485 253 344
	홈페이지	www.iias.cz	E-mail	ii@iias.cz

주: 2012. 3월 기준 입주 가능 단지임

자료: CzechInvestt

□ 체코의 투자 환경

가.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로써,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지리적으로 서유럽에 가장 근접하고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 1일 EU 가입으로 거대 EU 시장에 통합됨으로써, 유럽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국경 조약인 쉥겐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EU 내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잘 갖추어진 인프라

IMD의 2009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체코는 세계 29위로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실질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나 사회제도적인 측면은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체코는 총 연장 9,578km에 달하는 철도망을 갖추어 유럽 국가 중 가장 조밀한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 물류의 핵심인 도로망도 2009년 말 기준으로 729km의 고속도로와 54,990km의 일반도로가 이용되고 있어, 원활한 육로운송이 가능하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속도로의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육로운송 환경은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7개의 국제공항과 676km에 달하는 수로운송 구간 등 물류 인프라는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다. 우수한 인적 자원

체코인은 높은 교육열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세계 최고 수준), 유럽에서 고등교육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풍부한 외국어 구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체코의 대학생 수는 총 33만명 수준이며, 이중 과학 및 기술 분야 대학생 비율이 약 44.3%로 프랑스, 독일, 영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유럽 내 핵심 산업 국가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기능 인력 수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체코 정부는 부족한 고급 전문 인력 및 기능 인력의 외부 유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투자진출 외국기업들의 특정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그린 카드제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 하고 있다.

라. 우수한 국내 산업 기반

유럽의 전통적인 공업국으로 부품 및 소재산업, 금속 및 기계산업 등 안정적인 기초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기업들의 제조업 투자 증가와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으로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ICT, 생명공학, 의료기기 등의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 선진국 수준의 생활 여건

구 공산권 국가 중 슬로베니아에 이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등의 발달로 서유럽 주요 도시에 버금가는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제도와 치안 등은 체코의 최대 장점이다. 2008년도 IMD 보고서에 의하면 체코 생활 지수(Quality-of-life)는 조사 대상 55개국 중 19위로 나타나 중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록13 무역과 투자 시 애로사항

가. 무역 거래 시 애로 사항

체코는 EU 국가로 무역이 자유화되어 있어 무역 거래에 있어서 법적인 애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체코 바이어들의 대부분이 송장에 의한 역내 거래에 익숙해져 있고 아시아 등 원거리 국가와의 무역 거래 경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가격 조건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잦은 실정이다. 또한 실수 요자인 공장 등과 거래 시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체코어 통역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시장이 크지 않고 보수적인 안정 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첫 거래 규모가 기대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우리기업들의 주된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나,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됨으로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계획 경제 시절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비즈니스 출장 시 방문 상담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며, 국내 시장의 한정적 규모로 인해 많은 수입상들이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진출 초기의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 투자 진출 시 애로 사항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시 명확한 토지 소유권 획득이 쉽지 않은데, 이는 공산화 이전 소유권자들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 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도 “선의의 제 3자가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명시하여 법률적 효력에 한계를 두고 있음으로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문가를 통한 권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공장 부지 매입 때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코의 투자진흥청 (CzechInvest) 및 해당 지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지방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법인 설립 및 공장 건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은 반드시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이 자주 개정되고 있으므로, 완벽한 파악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투자 시에는 현지의 유능한 컨설팅 업체나 법률 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14 일반적인 상관습

가. 상담 일반 사항

체코 수입 업계의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의 어떤 회사로부터 특정 제품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제품 공급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제 3의 기업에서 상당히 좋은 거래 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코 수입 업체들이 이러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독일의 영향으로 안정 지향적인 사업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신규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에게는 상당한 인내력을 요한다. 그러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 바이어들도 기존 거래선 외의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격에 대한 조건을 보면서,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중부유럽에 속한 체코는 이미 개방화된 지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한국상품 및 기업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순조로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시장 특성과 수입 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가 체코 수입업체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거래 관련 종합 정보 일괄 송부

체코 업체들은 생소한 외국 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작할 때 잦은 교신보다는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 희망 서신,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처음에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단한 자사 소개와 거래를 희망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회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지속적, 적극적 사후 관리

거래에 필요한 종합 자료를 송부하고 2~3주 후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토 결과를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체코 업체에서 회신을 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이 송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한 경우,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우리업체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데, 상담 시 약속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사의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바이어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상담에서 거래성사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산업재의 경우에는 1-2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우리기업의 각별한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3) 거래 조건 제시 시 유의 사항

체코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주로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격을 제시 할 때 FOB Korea(Busan)보다는 CIF Hamburg로 하는 편이 바이어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수출 가격은 비교적 여유 있게 책정하되, 최소 주문량은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특히 첫 거래인 경우)이므로 최대한 낮추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거래 시 가격 오퍼를 받은 경우 체코 바이어들은 가격이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을 경우 가격 협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바로 상담진행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바,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둔 가격 제시보다는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당수의 체코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근 국가의 대형

수입상을 통해 외국산 물품을 간접 수입해 오고 있다. 즉, 체코 바이어들의 자본력이 아직은 취약한 관계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데 따른 거래 조건 (한국 수출 업체의 L/C 또는 T/T 선호, 약 2개월의 인도 기간, 높은 수준의 최소 주문량 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반면, 소량씩 적기(일주일 내)에 외상(60~90일)으로 공급해 주는 인근 국가의 대형 바이어로부터 간접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체코는 외상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바이어의 대금결제 조건을 수용하되, 바이어의 신용 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수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4) 전화/팩스 겸용 전화 사용

체코 업체들 중에는 전화/팩스 겸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팩스 송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프라하 무역관에 팩스 전달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e-메일을 통한 교신을 선호한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일반적으로 체코 무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최근 많이 좋아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호간의 오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처음 접촉 시 구두 영어(전화) 보다는 팩스나 e-메일을 이용하여 교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체코 비즈니스계의 e-메일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다.

체코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미리 체코 업체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영어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을 사용하여야 원만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약속은 2~3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여야 한다.

다.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체코의 경우 사회주의 생활 양식 및 의식이 아직도 중·장년 층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코 바이어의 거래관행을 수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체코 바이어들은 비 L/C 거래를 선호하고 거래 착수 시부터 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거래 관행과 자본력 취약에 따른 독일 등 주변국의 수출업자들이 신용 거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L/C 거래가 선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주요 은행들이 L/C 개설 시 수입 금액의 110% 정도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어 3개월 정도 자금 회전이 막혀 금융 부담이 크고, 아직 서구 기준의 현대적인 금융 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L/C개설 및 조건 변경 등 수속이 복잡한데다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과 아울러 은행을 통한 서류 거래로 거래 자료가 100% 노출되어 절세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규모가 커진 수입상이나 대 아시아 교역에 익숙해진 수입상들은 점차 L/C 거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경우 주문과 함께 T/T로 20~30%의 선수금 송금 후, 선적 서류의 사본 확인과 함께 잔금 역시 T/T로 송금하거나 30% 정도의 선수금분만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해 D/P로 거래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외에도 선수금을 T/T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신용장 개설 또는 은행을 통한 D/P거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L/C 거래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 사본을 요청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과하여 처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공항세관 등은 수취인 여부만 확인되면 선적 서류 원본 없이도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부록15 시장특성

가. 시장 규모

체코의 연간 수입 규모는 2010년도 기준 1,256억 달러로 EU 신규 가입국 중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2위의 수입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1일 EU 가입 이후 서구 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정립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완제품 수출의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가 정착되면서, 최근 5년간 지속된 수출 호조 영향으로 수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체코의 인구는 1,053만 명 정도로 유럽 에서도 소규모 국가에 속하고 1인당 GDP는 2010년 기준 18,532달러이나 현지 물가에 따른 구매력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PPP기준)는 2010년 기준, 25,451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동부 유럽에서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나. 시장 특성

1) 산업 특성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 국가로 오랜 제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회주의 통치를 겪으면서 일반 소비재 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서비스 부문은 취약했으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후 서비스 산업 또한 급속히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등 수송 기계류를 포함한 기계류, 화학, 식품공업 및 유리 산업 등이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으로 IT 및 기업서비스, R&D 센터 등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및 생명공학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4년 EU 가입 이후 서구 기업들의 생산 투자 진출 확대로 서구 시장을

겨냥한 생산 기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원부자재의 수입 및 완제품 수출이라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구축하였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가 전체 산업을 계획, 투자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산업간 치열한 경쟁은 없으며, 지방특성에 맞게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2) 소비 특성

체코는 과거 동구권 국가 중 제2의 높은 국민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 비교적 풍족한 소비 수준을 누렸으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직 월평균 소득이 1,500달러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중저가 품목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체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충동 구매 성향이 약한 편이고 다소 엄격한 계획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유명 상표에 대한 맹종 현상이 낮은 편으로 상품 구입 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증가에 따라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 상품의 경우 점차 유명 상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구매가 활발하며, 7~8월의 휴가철은 구매 활동이 침체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수입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2월 및 9~10월에 수입을 확대 한다.

생활수준은 월평균 명목 임금이 2010년 기준, CZK 25,803 정도로 서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가구 당 2인 소득, 저렴한 기초 의식주 비용, 교육비 및 의료비의 전액 정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며, 특히 운동용품, 레저 용품, 문화용품 등은 고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 정부의 사유 재산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은 계층이나 신흥 비즈니스맨 등은 고급 소비 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3% 내외는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상권의 경우 개방 이후 유통업 등 서비스 분야가 자유화됨에 따라 인근 서유럽의

대형 유통 업체들이 유통업에 대거 진출하여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중국인 및 베트남인들이 의류, 신발류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의 상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수입 상품의 경우 체코는 시장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선진국의 고급 제품, 동남아, 구동구권 등으로부터 수입된 중·저급 상품들이 혼재하고 있어 수입 상품 간 품질 및 가격 경쟁이 치열하며 상품 구성도 다양한 편이다.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체코 시장도 고급품 시장과 저가품 시장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유통 구조

체코 내 유통 단계는 수입업자/도매업자, 도매업자(분배업체) 및 소매상의 2~3단계로 되어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1단계가 생략된다.

수입/도매업체는 소매업체의 소량 주문 수용을 위해 보세 창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 마진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마진을 체계는 대개 1:2:3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업자 마진율이 10%일 경우 도매업자 20%, 소매상 30%의 마진을 취한다.

프라하 및 주요 지방 도시에는 백화점이 있으나 백화점 숫자가 아직 적어 전체 유통 분야에서의 백화점 비중은 상당히 미약하다. 서구의 유통 업체들이 대형 하이퍼마켓 (TESCO, MAKRO 등) 및 슈퍼마켓 형태로 체코 유통업계에 대폭 진출하면서 유통 분야의 대형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부터 대형 쇼핑몰의 건립이 붐을 이루면서 유통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라. 한국 상품 인지도

현대자동차가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에 생산 공장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판매 신장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K-pop에 대해 젊은이들의 인지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일반 생활 소비재의 현지 시장 진출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여타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록16 체코 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체코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기 비자 취득, 외국인 거주 등록, 은행 구좌 대출, 자동차 운행 등록 등이 불가능하고 이삿짐을 인수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주거 환경의 경우 개방 후 98년 이전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였으나, 2000년 이후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되어 외국인을 위한 주거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외국인 학교 인근(Praha 6) 지역의 타운하우스(침실 3~4개 기준) 월 임대료는 2,300~3,000유로 수준이며, 시 외곽 지역은 1,500~1,800유로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여름이 서늘한 기후 영향으로 냉방 장치는 없으나 기타 난방, 가스, 전기, 수도, 전화 등 설비는 완비되어 있다.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부엌용 가구는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 사용료 등은 매월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연간 단위로 재정산하는 게 일반적이며, 전화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데 한 달 후에 청구서가 나오는 관계로, 이사 후의 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http://realestate.expats.cz> 사이트에서도 적당한 집을 물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1~2 개월 치를 예치하여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통상 소개 수수료로 1~2 개월 치의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 100%임차료+ 20%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모두 합법적이다.

계약 시 보증금 지불은 계약과기 시 규정을 잘 확인한 후, 서명 후에 주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일상 적이다.



나. 행정 절차

장기 비자를 발급 받아 체코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지역별 외국인 경찰서에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는 주소지만 체코에 있으면 장, 단기 체류자 모두 가능하며, 유로화나 달러 계좌와 체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체코는 외화 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어 외화 표시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송금 등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 단, 은행거래 유지 및 해외 송금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은행마다 차이가 크므로, 꼼꼼히 알아본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 전화 신청

임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명의 변경은 집 주인이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규 전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통상 1주일이면 설치된다.

마. 자동차 구입

체코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딜러를 통하여 시판되고 있으며, 정비소도 있어 한국차 구입에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가격이 한국에 비해 고가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 체코는 왼쪽 핸들이며, 환경오염 문제로 차바퀴 뒤에 고무 패널과 공기정화기(catalyst) 부착, 헤드라이트 조절기, 상비 약품통, 고장 표시 삼각대가 필수이므로 사용하던 차량을 반입할 때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자동차 등록 시 필요).

바.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체코 비자 보유자, 장기 비자(1년 이상)보유자, 영구 거주 허가증 보유자는 동 서류에 기재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거주 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에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교환 및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체코어 서식)
- 한국 운전면허증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식 번역본(대사관에서 발급)
- 여권
- 90일 이상 체류 비자 또는 장기 거주 허가증 또는 영구 거주 허가증
- 컬러 사진(45x35 mm) 1매
- 발급 경비 CZK 50

체코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통상 20일이 소요되나 급행료 CZK 500을 납부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사. 식품 구입

한국 식품점은 프라하에 세 곳이 영업 중이다. 배추, 무, 두부, 양파, 시금치, 당근, 상추, 파, 감자 등 정도는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프라하 외곽 지역의 베트남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동양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한국 및 아시아 식품류의 구매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또한 Tesco, Makro 등 다국적 유통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여 일반 생필품 구입도 원활하다.

아. 의료

병원 설비와 의료기술 자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이 제한되어 있다.

앰블런스가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는 국번 없이 155번으로 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중전화도 동전이나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약국은(Lekarna) 통상 월~금

08:00~18:00까지 영업하며 지역별로 한밤중이나 주말에도 영업하는 약국이 지정되어 있다.

처방약이나 OTC 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자. 레저 및 스포츠

현지의 주요 레저는 테니스, 수영, 스케이팅, 낚시, 스키, 카누, 승마, 사이클링 등이며 최근 골프장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테니스의 경우 지역별로 양질의 클레이 코트와 실내 코트가 많으며 사용료도 저렴한 편인데 이는 테니스가 체코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수영장은 호텔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스케이팅은 프라하 시내에 각 구별로 실내 링크가 있다. 스키의 경우 독일 국경 지역,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국경 지역,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지에서 즐길 수 있다.

차. 치안

급속한 개방에 따른 차량 도난, 주택 절도 등 치안 사범이 발생하기도 하나 전반적인 치안 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관광객의 대거 유입으로 수도 프라하 중심가에는 소매치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고액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매치기는 지하철, 찰스다리, 구시가 광장, 맥도날드 등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다.

체코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나(베트남인 노동자와 중국 불법 이민 등)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소 예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차별 대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복장과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코인들은 주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통하여 한국인을 인식하며 문화, 예술적인 이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카. 한인 사회

현재 체코 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사관 등록 기준 약 1,850명 정도로 2004년 5월 KAL 취항 이후 급속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인회가 2000년 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 모임도 있으며 이 외에도 1997년 3월부터 한인학교가 개교 되어 매주 금요일 오후(16:30-19:30)에 운영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인터넷 체코한인신문(www.koreanincz.cz)이 발간되어 현지 사회동향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타. 자녀 교육 여건

체코 공화국 내 모든 교육 기관은 무료이며 대학 이하에서 교과서 및 각종 교육 자료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의무 교육은 초급 교육 과정인 6~15세까지 9년이다.

교육 제도는 3~6세 사이에는 유아원 및 유치원에 재학하게 되며 6~15세까지는 초급학교 교육으로 의무 교육이다. 초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4년 과정의 중등교육 과정을 밟게 되는데 중등 과정은 대학 진학을 대비하는 일반 교육 과정과 기술 과정을 받게 되는 직업학교로 크게 나뉘어 진다. 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등 교육 기관에 진학하게 된다. 현재 체코 내에는 대학을 포함해 123개의 고등 교육 시설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는 영어로 교육을 하는 프라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미국계), 영국계 국제학교(The Prague British School)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학교 등이 프라하 시내에 개설, 운영되고 있다. 한국인 자녀들의 경우 체코 거주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체코 교육 기관에 체코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학할 수 있으나 체코어로 수업을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부분 영어로 수업하는 상기한 프라하국제학교(ISP)와 영국계 국제학교인 PBS로 진학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트라, 한국수출입은행
- OECD
- 주한체코대사관, 체코상공부

【도움자료를 주신 곳】

- KPMG 회계법인, 딜로이트 회계법인, 삼일 회계법인
- 두산중공업, 현대하이스코, 성우하이텍

【기타 참고자료】

- 각종 장·단기 국외위탁 교육 보고서 및 OECD 회의 참석 보고서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체코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체코 세법 등을 2012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체코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8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국제조사관 조 용 택

임 정 환

문 상 용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397-140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